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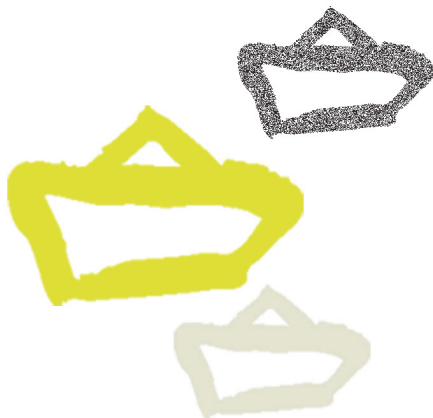
사회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안전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 최명선 민주노총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특별법, 우리는 왜 '안전소위원회'를 만들려 했는가?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토론 안전사회시민연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일시 : 2014.10.29 (수) 오후 2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기획]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5쪽

[발제]

사회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9쪽

-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1쪽

-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유가족)

.....53쪽

[토론]

-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57쪽

-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65쪽

-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75쪽

[기획]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안전대안팀

1. 토론회 취지 및 기조

- . 첫 번째로
 - .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는 자본, 규제를 포기한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재난 구조 실패에서 비롯한 것임.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안전규제 완화’가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었음에도, ‘규제는 악’이라며 규제완화를 지속하고 있음.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마치 경기위축을 불러온 원인인 양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
 - .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가 과적과승임.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연안여객에 대한 안전 대책은 물론이거니와 곳곳에 산적한 위험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규제를 강화할 방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음.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이라고는 안전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보자는 아이디어이고, 대중적인 처방 이상으로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음.
 - . 세월호 참사 200일에 즈음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 . 두 번째로
 - .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문제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음. ‘홍도 유람선 침몰사고’ ‘판교 환풍기 붕괴 추락사고’ 등에서도 확인되듯,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가 곳곳에 각인시키지 않는다면,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도 않을뿐더러 시민들은 반복적으로 희생만 당할 뿐임.
 - . 수년 간 반복된 대형재난사고를 보면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안전문제에 대해 한국사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촉구해왔음. 특별법에 ‘안전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이런 맥락.

- 이제 국민대책회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유가족들과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려하는지, 어떤 고민 속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위험을 줄이려 하는지,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여러 사회운동과 어떻게 연대하려 하는지, 그 상을 밝히고 시민들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최

- 공동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민주노총

3.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4. 사회 및 발제, 토론

1) 사회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발제

-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안전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 최명선, 민주노총
- 세월호 참사 5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특별법, 우리는 왜 ‘안전소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는가?_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하며 : 김성실,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3) 토론

- 안전한 사회를 향한 시민의 운동, 민주주의, 연대 : 안전사회시민연대
- 노후산단과 위험물질 감시운동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수명 끝난 원전,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토론회

○ 취지

-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사회여론을 환기하고자 함.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안전사회를 만들려는 여러 사회운동들과 연대를 강화하고자 함.
- 연속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후원.

○ 계획

- ① 반도체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_ 반올림 등 (10.30)
- ② [국제포럼] (가칭) 제2의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한 정책 과제 _ 민주노총 (12.1~2)
- ③ (가칭) 노후산단과 노동자·시민의 안전 토론회 (논의 중) _ 건설플랜트노조 · 일과 건강 등 (12.3)
- ④ (가칭) 수명끝난 노후원전 폐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중) _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12월 중)

※ 긴급안전진단, “위험한 사회를 바꾸는 제보자가 되어주세요”

〈별첨자료〉

[발제1]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1. 들어가며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걸고 집권한 정권이다. 그러나 당선 첫 해부터 삼성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한 연속적인 화학사고와 중대재해 그리고 이에 대한 생색내기 대책으로 이미 “안전한 대한민국은 사기극”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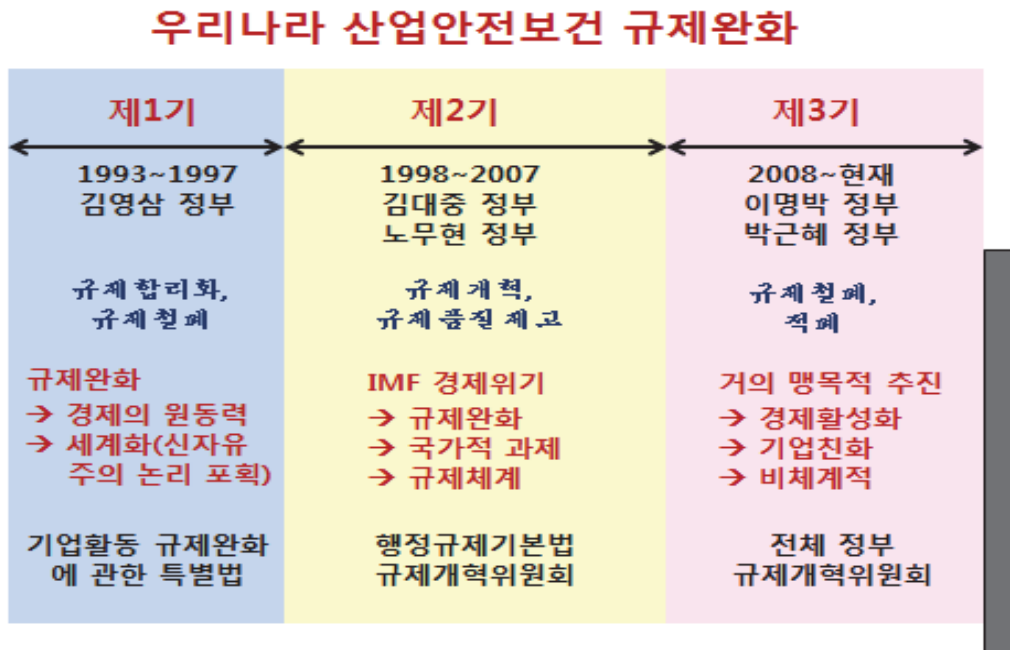
급기야 세월호 참사와 이후 연속적인 시민안전 재난사고로 한국사회 곳곳의 구조적인 문제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핵심은 “규제완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등 자본의 탐욕이었고, 규제완화 정책, 솜방망이 처벌 등 자본의 탐욕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권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된 한국사회의 안전으로 최근의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또 다시 발생했다. 중간수사결과에서 환풍구의 공사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공연의 안전관리 대상을 완화한 규제완화가 문제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200일이 다가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기억에서 잊혀진지 오래다.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자욱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거부당하고 있고, 세월호 이후 수없이 쏟아진 재난사고와 최근의 판교 붕괴사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생자와 가족의 피눈물”이 또 다시 흘러넘칠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연속적 중대재해의 핵심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선령, 철도, 지하철의 내구연한’ ‘과적’등 각종 규제완화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200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정부는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으로 규제완화를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하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하는 규제완

화 중단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안전규제 완화 실태

1) 규제완화의 흐름



[표 1 민주노총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토론회]

2) MB 정부 안전규제완화

○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분위기

- 합리적 논의 보다 규제는 '악'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
- 재벌 대기업 친화적 규제개혁

○ 덩어리 규제 해소 추진 체계 정비

- 규제일몰제를 확대하고, 미 등록 규제의 조사와 등록을 통해 규제 정보 시스템을 구축
-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와 '규제개혁 위원회'로 하여 규제 개혁과 규제심사를 분리

○ MB 정부 안전규제 완화

- 선박, 철도, 항공기 등의 내구연한을 폐지하는 안전 규제완화가 일괄적으로 진행

선박	- 여객선 선령 제한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 (2009년)
철도	- 철도와 지하철 차량의 사용 내구연한 삭제(2012년 개정, 2014.3월 시행) - 철도차량 무인 운전시 운전자 탑승하지 않도록 관련규제 완화 - 철도 터널 출입구에 긴급 구조 차량 진입로 설치규정 완화 - 차량 정비 점검 의무조항 임의조항으로 완화
항공기	- 25년 이하로 제한했던 부정기 항공운송용 항공기 기령 제한 폐지 - 정비를 위한 격납고 시설 요건 폐지 - 항공기 승무원 및 관리자 항공위험물 정기훈련 주기 및 이착륙시 미끄럼 방지위한 활주로 고무제거 주기 완화
건물	- 내진 설계 완화 대상 확대
소방	건물 소방검사 사전예고기간 24시간에서 7일로 확대. 전수방식 소방검사를 샘플링 방식 소방 특별 조사로 대체
어린이집	- 보육교사 직무안전 교육 완화
산업안전	- 2010년 : 특수건강진단 검진기관 교육, 정도관리 주기 완화 개별 실적 효율제 확대 (건설업) 기업의 안전인증 면제대상 확대 및 인증절차 완화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완화 - 2011년 : 각종 안전보건 기관의 사무실 면적 기준 완화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안전관리, 보건관리 대행기관, 지정검사 기관, 국소배기장치 등 시설업체) - 2012년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대상 확대

[표2 언론보도 취합 인용 2014.]

3) 박근혜 정부의 안전 관련 규제완화 (2014년 5월 기준)

○ 박근혜 대통령 “규제는 쳐부수어야 할 원수이자 암 덩어리”

- 3월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통해 임기 내 10%, 임기 말까지 20% 줄이겠다고 발표
- 규제개혁위원회에 5월18일 현재 제출된 규제개선과제 852건 중 안전관련 규제가 119건
- ‘규제 비용 총량제’, ‘네거티브제’, ‘일몰제’ 통해 가속화.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부처별 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속속 개최.
- 국무조정실은 안전관련 규제완화 제외 주장. 이는 안전을 협소하게 바라본 소치임.

- 규제완화 주창자와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표적인 규제완화 주창자로 구성
 - 민간위원 13명중 5명이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거나, 현직에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등 자본의 대표로만 구성
 - 규제개혁위원회 전면 재 검토 없이는 다양한 편법과 방식으로 ‘묻지마 규제완화’ 지속

○ 박근혜 정부 하에 줄줄이 규제완화

-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안전문제로 반려된 ‘수직증축’ 허용. 아산 오피스텔 철거 붕괴
- 2014년 1월 전경련 엄격한 수질 규제 문제제기. 환경부는 당시 반발했으나, 입장선회
- 환경부 4월3일 전경련, 대한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참여한 환경 규제개혁회의 개최. 환경규제 849건중 8% 올해 안에 감축, 2016년까지 기존 규제 75%에 일몰제 적용 발표.
- 세월호 참사 이후인 4월22일 국무회의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법령 (주무부처)	개정 시기	개정 전	개정 후
선박 안전법 (해양수산부)	2013	안전점검 사업자가 자료제출 명령 거부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나 과태료 중 하나만 처분
해상안전법 (해양수산부)	2014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자가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2014	선박안전관리 체제 관련 지침서등 의무배치는 모든 선박 해당	선박규모 한정, 해상화물운송사업 종사 선박은 일부 면제
	2013년	항만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해상교통 안전진단 의무화	5,000톤 이하 등 소규모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항만 시설 안전진단 면제
	2013	내항선 선장의 부적합 보고 및 연 1회 내부 심사 의무	선장보고의무 폐지
		컨테이너 현장 안전검사 대신 서류 제출	2014년 1월 시행
선원법 (노동부)	2014		선장 휴식때 1등 항해사 업무대행
	2014	예인선 일반선원 야간당직의무	폐지
	2014	선원 파견근로 금지	선박검사원, 선박수리 승선 기술자 파견근로 허용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201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시 안전교육의무화	위탁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 이수시 추가 안전교육 면제

법령 (주무부처)	개정 시기	개정 전	개정 후
철도 안전법 (국토교통부)	2013	철도차량 운전면허 5년마다 갱신	10년마다 갱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2013	차종별로 내구연한을 정해 정밀 진단을 거쳐 차량 수명 연장하는 제도	폐지, 관련업체의 안전관리보고서 승인제로 대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 원부)	2013	정부, 안전관리 위반한 업체의 경우 '위해 사실'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 명령	정부 조치 받은 사실만 공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방방재청)	2013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요건 중 사무실 최소면적 기준 명시	삭제
화학물질 관리법 (환경부)	2014	-화학물질 사고 사업장 전체 영업정지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 대비 5% (신설)	- 사고발생 현장으로 축소 - 영업정지 기준 완화 - 과징금 산정기준 완화
화평법 (환경부)	2014		-화학물질 성분 영업비밀 사안 보고대상 제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2014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타법 절차로 완화(입법예고)
환경부	2014	화학업체 대상 지도 점검 연4회	연 1회
국토교통부 (주택법)	2014		15년 이상 건물 수직중축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2014	사업주 산재보고 대상 요양 4일	휴업3일(산재은폐 확대)
승강기 안전관리법	2014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조건 완화, 사고발생시 조사보고 범위 축소

* 개정 추진 중인 사안

- 해운 : 항만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의 현장 점검의무 연 1회 이상에서 연 1회로 축소
- 환경오염 배상 책임 완화: 피해유무 입증 주체를 기업에서 피해 주민으로 변경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품 리콜 기준 완화: '중대결함'에서 ;결함으로 인한 중대사고' 로 변경

[표 3 박근혜 정부의 안전규제완화 추진 현황]

○ 구급차의 운행 연한 규제 강화 규제개혁위원회 제동으로 좌초

- 현재 민간 이송업체가 운용 중인 구급차 총 799대 중 260대, 대한구조봉사회가 운용 중인 구급차 총 271대 중 226대가 운행연한이 10년 초과. 구급차의 노후화 심각
- 2013년 8월 복지부 민간 구급차 사용연한 9년으로 제한, 신규 이송업 허가 시 구급차 의무 보유대수를 5대에서 10대로 늘리는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구급자동차의 기준에 운행연한을 추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규제 개혁’이 국정 의 최 우선 과제로 대두되면서 ‘사업자 부담을 늘리는 규제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

○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대표적인 안전규제 완화
 - 개정 전까지는 주택 리모델링시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별개 건물을 짓는 것)을 통해 세대 수 증가 가능.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15년이 넘은 아파트 2~3개층 수직증축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4월25일부터 시행

-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체 가구 수도 15%까지 증가가능.
- 건설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안전을 이유로 유보되었던 규제완화를 박근혜 정부가 전격 수용

○ 안전관리 대상 지역 축제 인원 3,000명으로 완화

- 10월17일 판교 환풍구 붕괴로 16명 사망 11명 부상.
- 10월27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부실시공 문제 밝혀짐.
- "국과수의 1차 감정결과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용접불량, 지지대 절단,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적절한 시공형태가 보인다"
- "덮개 지지대(L자형 사각형)의 전체 앵커볼트 수는 40개인데 이 가운데 11개 불량 시공
- 환풍구 설치 기준도 문제. 2013년 11월 부산 백화점 지상 1미터 높이의 환풍구에서 추락 사망사고 발생
- 2014년 2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연법의 관리 대상 지역 축제를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 으로 명시
- 2014년 3월 소방 방재청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축제장 안전 매뉴얼’ 적용대상 축소
- 2013년 7월 인천 무의도 축제는 예상 관람객 1,000명에 안전요원도 10여명 배치했으나, 2014년 판교 지역 행사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됨.

4)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의료 민영화,영리화

- 정부가 3월27일 발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보면 41건의 ‘수용과제’에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자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제조업 업체별 허가 등이 포함. 특히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 26건 가운데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제만 9건.

규제	추진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복지부, '14.6월)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기관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
원격의료 허용	6개월간('14.4월~10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회입법 과정에서 동 결과를 반영하여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복지부)
의료기기 제조 제조업체별 허가 로 전환	동일한 제조업자가 추가적인 제조업 허가 없이 타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선(식약처, '14.4월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완 화	우선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 실시를 허용(식약처, '14.4월)
신 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허가도우미 제도를 활용하여 인허가기간 단축 지원(식약처)
스마트폰 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없이 출시가 가능토록 허용(식약처, 의료기기품목에 관한 규정 개정, '14.4월)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	현재 “국내 또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유치행위는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 중(복지부, '13.5월 국회제출)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 기간 단축(식약처)

[표 5 보건의료 관련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의 주요내용
민주노총 민영화와 위험사회 토론회자료집]

3. 안전 규제완화로 본 자본의 탐욕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 1993년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특조법) 제정
- 특조법의 50여개 항 중 안전관련 규제완화 항목 26개 조항
- 개별법 지정 안전 관리자 선임기준, 의무고용 완화. 겸직 가능. 안전 관리자 대폭 축소
- 각 분야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위탁 기준 전면 확대.
- 특조법으로 사업장의 일상적 안전관리 시스템 붕괴

번호	규제완화 내용	특조법	비고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축소	업종구분 없이 50인 이상 사업장만 선임	중전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업종의 경우 30인- 50인 미만 선임
2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축소	업종구분 없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선임	
3	각종 안전보건관리자 고용 의무 면제	해당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 고용, 임명, 지정 또는 선임 자율	산업보건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보안관리 직원, 중소기업 운영 집단 급식소 조리사,
4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허용	1명 채용 시 추가 고용인원은 타법의 관리자 겸직 허용	산안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자 1인 이상 선임
5	2종 이상 자격증 보유자 의무고용완화	중소기업이 2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채용 시 안전관리자 모두 채용한 것으로 간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6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에 공동채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유독물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대기환경 기술인, 수질환경 기술인,
7	안전관리 외부 위탁	각종 안전관리 대행기관 위탁	산안법 300인 미만 한정 외부 위탁. 특조법으로 전 사업장 외부 위탁 가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화약류 제조, 관리 보안 책임자, 유독물 관리자 등 8개
8	유해작업 도급인가 규제완화	유해작업 도급 인가 시 안전보건 평가 실시 권한 행사하지 않는다	산안법 유해 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 평가 실시
9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면제	제조업 면제	최근에 제조업 중 일부 업종 부활
10	유해위험 기계 기구 검사	프레스, 리프트 면제	산재다발로 관련 조항 폐기. 다시 복원시킴
11	검사 완화	타 법에 의한 서류제출이나, 인증시 검사 완화	액화 석유가스시설, 도시가스 시설의 산안법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면제 등
12	가스관련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	안전 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등 신고 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13	입찰 참가자격 제한 완화	다른 지자체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해 그 지방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면제	- 여러 지역에 사업장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관련 규제완화

[표 5 특조법의 안전관련 규제완화 주요 내용]

- 특조법의 도입으로 모든 산업현장, 가스, 석유,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완화된고, 검직이 가능해졌으며, 안전보건관리 대행이 무제한적으로 확대

- 특조법 개정 이후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현황 비교

구분	특조법 개정 전(96.12)	특조법 개정후(98.12)	증감
안전관리자	26,057	16,520	-9,537(-36.6%)
보건관리자	11,296	9,208	-2,088(-18.5%)

- 사업장과 노동자 숫자는 증가했지만, 안전보건관리자는 감소, 위탁 대행 증가

구분	선임신고 사업장수	자체선임 사업장수	안전·보건관리자수				위탁관리 사업장수
			계	전담	겸직	공동	
안전관리자	19,429 (1,422)	4,510 (966)	5,144 (1,480)	3,500 (1,401)	1,632 (79)	12 (0)	14,919 (456)
보건관리자	12,716 (1,073)	2,451 (667)	2,933 (1,063)	2,133 (995)	798 (68)	2 (0)	10,263 (406)

[표 6 2014년 8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및 위탁현황

단위: 개소, 명/괄호안 300인 이상 사업장]

- 특조법 개정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위탁 대행 확대

구분	계	50~99인 사업장수	100~299인 사업장수	300~999인 사업장수	1000인 이상 사업장수
안전 관리자	14,919	9,196	5,267	428	28
보건 관리자	10,263	4,426	3,203	375	31

[표 7 안전보건관리 위탁 대행 현황/ 2014년 8월]

안전보건관리 대행은 월 1-2회 전문가가 사업장 방문하여 점검해주는 것에 그침. 사업장 내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 불가

- 안전기준이나 매뉴얼은 있으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와 훈련을 시키며, 사고발생시 매뉴얼대로 시행할 시스템과 인력은 붕괴됨. 이후 안전관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고, 반복적인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됨.

- 프레스, 리프트의 정기 검사를 특조법 도입으로 폐지했다. 관련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장비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70%를 상회하게 되면서 수년 후에 다시 복원시킴. 그러나, 완화된 규제를 복원하는 과정도 어렵고 오래 걸렸으며, 제도의 완화로 발생한 산재 노동자만 증가.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심사제도를 특조법 도입으로 건설업만 남기고 제조업 면제. 이후 중대산업사고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일부 업종에 한해 제 도입
- 공정안전관리 제도는 국내 석유화학공장의 대형사고 빈발로 도입.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로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유, 석유화학업체 제도 폐지 의결. 이후 급격한 재해 증가로 다시 확대.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와 삼성 불산 누출등 화학사고 연속 발생. 근본원인중의 하나로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지적됨.
- 1987년 이후 한국의 산재는 감소 추세 였으나, 특조법 도입 이후인 1998년 이후부터 2004년 까지 증가추세. 재해를 증가의 원인중의 하나로 특조법 도입에 따른 규제완화로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완화가 지목됨.

2) 가스산업 안전관리 규제완화

- 1994년 서울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 발생. 사고이후 관리체계 확립. 안전관리자 선임과 배관 순찰 강화. 안전관리 인력 증원
- 2002년 이후에는 설비 증가 속도는 인원 확충을 훨씬 상회. 1997년 대비 공급설비는 3배 증가. 인력 확충은 10%미만
- 자본은 지속적인 완화 요구. 도시가스 안전관리 로드맵으로 배관 안전점검원 제도 해체
-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배관안전점검 기준 완화를 요구

시기		내용
1기	1995 년	-도시가스 사업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규제 강화 -배관 안전점검원 제도 도입. -선임인원 기준 15km 당 1 인
2기	1999 년	-첫 규제 완화 :현대화와 과학화의 정도에 따라 15km 당 1 인 기준 완화 가능함/도법에 규정된 안전관리 규제의 일부가 삭제됨. -97 년 경제위기 이후 민영화 및 규제 완화 분위기의 영향 받음
	2000 년 ~ 2007 년	-지속적 규제완화 시도: 배관 안전점검원 업무확대/15km 당 1 인 기준 완화 -시도의 근거: 경직적인 선임인원 기준으로 인한 비용 부담 및 효율성 저하/도시가스 사고의 현격한 감소 -업계의 요구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로드맵으로 집약됨
3기	2008 년	-시행령에서 안전점검원의 업무 확대 시도. -전도노협 대응 전산관리 업무와 사용시설의 공급전 안전점검은 제외. -병렬배관은 단일배관으로 산정(2009 년 개정), 시행규칙에서 60km 라는 인원 배치 기준과 과학화,현대화 정도 따라 선임 인원 변경 가중치 규정.
	2010 년	-시행령에서 안전점검원의 고유 업무 사라짐.(95 년도에 만들어진 안전점검원 제도는 거의 해체된 것으로 보임) -도시가스사들마다 안전점검원 업무가 상이해짐.

[표 8 가스안전관리 규제완화 경과]

3) 규제합리화를 가장한 자본의 탐욕 보장 수단 규제완화

-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 기본법’은 법령, 조례, 규칙을 대상으로 규제완화
- 경제 5단체 규제개혁 미명하에 안전감독,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구조 무력화 지속 요구

<u>31. GHS를 반영한 MSDS 제도 등의 시행시기 연장</u> <u>32. 산재발생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개정</u> <u>3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격기준개정</u> <u>34. 사업장 감독기준 개정</u> <u>35.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주기 및 대상 개정</u> <u>36.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기준개정</u> <u>37.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 개정</u> <u>38.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대상 기준개정</u> <u>39.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의무 명시</u> <u>4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삭제</u> <u>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의결사항의 조정개정</u> <u>4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기준 개정</u> <u>43. 작업 환경측정 주기완화 기준개정</u> <u>44.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사업주 처벌조항 삭제</u> <u>45.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대상개정</u> <u>46.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개정</u> <u>47. 건강진단 관련 근로자준수의무 개정</u>	<u>48.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기준 개정</u> <u>49.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및 교육시간</u> <u>50. 특별안전보건교육 방법</u> <u>51. 타워크레인 조정 작업 자격기준</u> <u>52.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u> <u>53.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u> <u>54.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 개선</u> <u>55.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u> <u>56. 유해인자누락에 대한 사업주 처벌조항 삭제</u> <u>57. 계단의 폭 기준 개선</u> <u>58. 안전벨트 압력시험주기의 합리적 개선</u> <u>59. 공장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u> <u>60.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적용대상의 합리화</u> <u>61.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제도 개선</u> <u>6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삭제</u> <u>6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제외대상자의 명시</u> <u>64. 특수건강진단 주기연장제도의 도입</u> <u>65.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u>
---	--

[표 9 2008년 경제 5단체 안전 분야 규제개혁 요구안]

- 4)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안전관련 규제를 철회나 제한 수정으로 안전대책 무력화
 - 노사정 논의에서 합의된 안전관련 내용도 규개위에서 자본의 로비와 압박으로 무력화

법령명	개정일자	규정내용	심사결과 ※권고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4)	2002. 12.30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재해발생 사업장 명단 및 재해현황 등 공표 신설	부동의
		(2) 사업주의 산재발생원인 등 기록·보존의무 신설	부동의
		(3)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에 교육항목 추가	개선권고 ※자체교육 강화로 대체
		(4) 사업주의 시정명령서 미게시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철회권고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4)	1999. 6. 8	(5)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 자격 삭제	개선권고 ※현행유지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을 50인 이상으로 확대	철회권고
	2003. 6.30	(7) 산재발생 공표대상 사업장 범위설정	개선권고 ※대상 하향 조정
	2004. 12.28	(8) 영업정지 요청대상 확대	개선권고 ※대상을 사망재해로 한정토 록 관련조항 삭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12)	1999. 8.28	(9)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비치서류 보존의무 신설	철회권고
		(10) 지정검사기관의 대행한계 규정 신설	철회권고
		(1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시설·설비기준 추가 신설	철회권고
		(12) 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요건 신설	철회권고
		(13) 건강진단결과 보고기간 명시 신설	철회권고
		(14)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강화	철회권고
	2000. 9.28	(15) 리프트의 완성검사 횟수 확대	철회권고
		(16) 안전인증 제품의 이중검사의 배제범위에 성능검사 제외	철회권고
		(17) 보호구 검정합격 표시의 위반에 대한 제재	철회권고
		(18)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 확대	철회권고
	2003. 7. 7	(19)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장비기준 조정	개선권고 ※인력기준 실무경력 3년→2 년으로 조정
		(20)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기준 조정	개선권고 ※시행시기 1년간 유예

[표 10 규제개혁위에서 개선권고 또는 폐지된 규정 1998- 2005년]

4.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제 강화되었나?

1) 주요한 안전규제완화 현황

가. 과적 문제

- 선박 과적문제 해결 못함.
- 육상과적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 수 년째 공방만 지속
- 과적문제 해결은 단속과 처벌의 문제로 해결 어려움
- 화주 혹은 화물운송사업주의 과적 지시 및 덩핑 운행 문제를 해결되어야 함.
- 과적 적발시 운송기사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보다, 중량 초과된 적재물을 하역지시 및 추가 배송의무를 화주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

나. 철도, 지하철 차량의 내구연한 문제

- 세월호 참사이후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 국토부, 철도 및 지하철 공사는 내구연한 개정안 의지 없음.
- ‘기대수명’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검사와 인증 기관만

다. 수직 증축 문제

- 최경환 경제 부총리 취임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 쏟아져 제시
- 수직 증축 문제는 주택경기 활성화 라는 미명하에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지도 않고 있음
- 재건축 안전진단등 각종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있음

라. 1인 승무제 문제

- 대구 지하철 참사의 주요 원인이었고, 철도 지하철 연속 사고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
- 정부 및 국회의 어떤 법 개정 논의 및 발의 없음

2) 참사이후 규제완화 드라이브 가속

가. 노동부 손톱 및 가시 “개별 실적 효율제 확대” 초고속 규제완화

- 부처별 할당 규제완화 : ‘손톱 및 가시’ 리스트
- ‘개별 실적 효율제’는 산재발생률에 따라 산재보험 증감하는 제도. 산재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2012년 대기업이 위험을 외주화 하고 개별 실적 효율제로 산재보험료 수백억 감면하는 문제점 지적. 오히려 산재은폐를 유도하는 제도로 노동계는 제도폐기 요구

- 노동부 산재보험 제도개선 노사정 논의기구에 개별실적 요율제 확대 및 전반적인 제도 개선 의제로 제출. 연구용역 실시
-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및 가시 리스트에 ‘개별실적 요율제 확대’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말 까지 노사정 논의하기로 함.
-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추석 전 실적 마무리 방침
- 노동부 9월25일 입법예고. 입법예고 4일. 바로 다음 주 국무회의 통과

나. 정부와 자본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

- 경총등 자본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리 기준 완화 요구. 관련 회의 했으나 노동계 및 전문가 반발로 취소
-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영리화 200만명 반대서명에도 불구하고 지속 추진
- 부처별, 지자체 별로 가속화 되고 있는 규제완화.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 강공 드라이브

다. 초법적 규제비용 총량제 실시

-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 그 순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2014년 7월부터 8개 기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청, 산림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중이고, 2015년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전면 실시 추진
- 현행 [행정규제 기본법] 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의 공표는 관보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지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진행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초법적 진행
- 규제의 목적, 필요성, 규제로 인한 폐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고려와 판단 없이 규제완화가 남발 가능성 증대 . 산술적인 규제의 양만 줄어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규제완화 남발
- 관련 법 규정 없이 진행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제도화 하기 위해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5.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

1) 위상과 구성의 문제점

- 행정기관의 성격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독립적 자문기구로서 성격이 혼재

- 민간위원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나, 모두 대통령이 위촉.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2명이 공동위원장
-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등의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대해 자문이 아닌 직접 심사 권한. 기존 규제의 정비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민간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음.
- 민간위원들은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인사로 구성. 대한상의등 경제단체들의 직접 개입. 노동계나 시민각계 각층의 이해를 대표하는 방안은 전무
-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의 대표성, 독립성 부족.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는 반면 기능과 권한은 막강
- 2014년 7월 규제개혁위원회 전면 개편. 제9대 민간위원장은 서동원 (현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으로 하는 등, 전문가 10명 전면 개편.
- 정부는 규제개혁 위원장 전면 개편을 “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규제개혁 추진 체계와 사령탑 전면개편” 으로 발표

2) 규개위 심사결정의 효력의 문제점

-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해 철회, 권고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개위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하고, 처리 결과를 규개위 제출 의무
- 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은 정부 입법 절차에서 사실상 배제
-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에만 초점. 사회적 비용 고려 없음

3)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실물 근거 없이 “묻지마 규제완화” 지속

- 규제완화의 핵심근거로 제시되는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은 <투자예상금액 X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임. 계수 적용에 따라 동일한 규제완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규모 제각각.
- 선박연령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 200억 추정. 관련 근거 없음
- 규제완화 추진기간 (2000- 2010년) 기업소득 증가율 16.4%. 가계 소득 증가율은 2.4%.

4) 외국의 규제개혁 관련 기구

(1) 미국

- 미국의 규제관리는 대통령실의 연방관리 예산처가 전담.
-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제 행정기관 의회 상원의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
- 공정위, 금융위등과 같은 독립 규제위원회는 관할 대상에서 제외
- 첫째, 연방 행정기관의 규제를 정하는 행정 입법들이 법률이나 행정명령의 규정 또는 대통령의 기조 정책과 일치여부 확인 둘째, 각 행정기관의 결정이 다른 결정기관의 정책이나 업무수행과 모순되지 않도록 심사, 확인 셋째, 각급 규제정책 자문관들에게 규제의 기획과 심사에 대한 지침 제공 정도

(2) 영국

- 산업혁신 기술위의 규제개선 집행국이 정부 규제개혁 총괄
-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인 규제개선 위원회 별도로 운영
- 독립 규제기관은 관할 대상에서 제외

(3) 독일

- 규제개혁 전담 별도 행정기관 없음. 부처간 협의로 관리
- 독립된 자문기구로서 독점 규제위원회 설치 운영

5) 역대 정부의 무차별 무분별 규제완화의 폐해

- 카드 사용한도 규제 폐기 : 신용카드 대란 신용불량제 양산 사태
- 저축은행의 제로 베이스 규제완화 : 저축은행 사태와 서민 피해
-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 : 재벌 대기업의 문구, 빵집, 도매, 비빔밥등 중소기업인 적합업종 진출
- 대형 마트 진출 허가제 규제폐지 - 대형마트 동네 상권 진출
- 재벌의 출자 총액 제안 규제 폐지
- 정리해고 규제완화: 대량해고 일상화와 자영업자의 과잉
-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 기간제 , 파견제 비정규직 만여
- DTL, LTV등 무분별한 대출규제 조치의 해태
- 개별 부담금제, 분양가 상한제,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등 투기억제 제도 폐지
- 사행성 게임의 폐지 : 바다이야기 사태등

[표 1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4, 4]

6. 규제완화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발의

1) 자본의 요구에 화답하는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발의

- 2014년 6월 전경련에서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 평가 및 보완과제” 발표
- 규제개혁을 가장 효율적인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주장.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점은 규제개혁이 시스템이 아닌 정권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어 지속성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개선 청구제’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정부 발의 환영
- 규제비용 총량제 적용대상을 모든 규제에 확대하고,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역할과 위상 강화 주문

2)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완화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부처 별로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규제완화가 일시적 소강상태
-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3개월도 안 돼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발의
-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규제 비용 총량제’, ‘네거티브제’, ‘일몰제’를 아예 법령화 하는 개정안 제출

구분	현행법	법 개정안
규제비용 총량관리		- 규제 신설, 강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완화해 규제 비용 총량 유지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		-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시장 진입, 사업활동 규제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등 신설 규제에 적용
규제일몰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 (5년)	-원칙적 존속기한 (5년), 예외적 재검토 기한 (3년) 설정 의무 부과
규제개선 청구제		- 규제 개선 청구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자가 실명제로 신속 답변
규제의 탄력적 적용		- 기술발전, 음향 분야 적용규제 사전 질의에 대한 신속한 회신의무 부과 - 규제 개혁위원회는 필요시 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 유예 권고 가능
규제의 차등적용		-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시 소상공인, 중소기업등에 대해 규제의 차등 적용권고 가능
연관규제 통합관리		- 각부처는 덩어리 규제등 다수부처 연관규제에 관한 정비 의견 제출 -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시 개선 권고 가능
고시에 의한 규제		- 사전에 행정예고 및 법제처 협의 의무 부과
규제등록 공개	공포 발령후 30일 이내 등록	- 공포, 발령 후 14일 이내 등록 의무 - 미등록 규제는 개선 청구 대상에 포함
자자체 규제 관리 강화		- 지자체는 규제정비 추진 결과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생명, 안전등 규제관리 강화		- 위원회는 생명,안전등 규제의 신설, 강화등을 각 부처에 권고 가능
적극 행정연혁 강화	공무원의 행위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 기존 조항을 ‘직무감찰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로 보완해 행정면책 여지 확대

[표 12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요약. 연합뉴스 보도]

2)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1) 원칙 허용- 예외금지 규제방식의 도입

-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 모든 경우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임
- 생명, 안전, 환경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완화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음

(2)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 일몰제”의 도입

- 규제비용 총량제는 영국에서만 실시하고 있음
- 소관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경우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 의무 부과
- 규제 비용의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 규제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기존 규제를 정비 가능하도록 함.
- 규제의 존속 또는 재검토 기한 연장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개정하여 규제 일몰제를 강화
-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규제완화 추진 위험성 농후
- 기업의 비용만 중시되고, 일반 국민의 이익은 무시될 가능성 농후
- 규제비용 총량제 및 일몰제는 규제의 신설, 강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추가

(3) ‘안전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으로만.

- 현행 법안에도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등의 보호에 대한 규제의 원칙 있었으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진행됨. 개정안에는 안전관련하여 ‘재난, 재해’를 추가한 것에 불과
-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 인권, 건강, 환경 및 안전등의 보호를 위해 규제의 신설, 보완, 강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신설. ‘권고 할 수 있다’
- ‘안전규제’의 범위가 모호하고, 실제적인 세부 방안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수직증축과 내진 설계등 안전에 치명적인 규제완화가 건설경기 활성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각종 안전규제가 지속될 것임.
-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 개정안 전체가 규제완화를 가속화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전’ 관련 규제 강화 권고는 극단적인 생색내기, 형식적 포장에 불과함.

* 밑줄 친 부분만 개정안으로 제출된 것임.

제5조 (규제의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재난, 재해 및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

제16조의2(규제의 신설 등 권고) 위원회는 생명·인권·건강·환경 및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규제의 신설·보완·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표 13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안전' 관련 조항]

(4) 무소불위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

- 규제개혁의 신설과 강화에 대한 심의뿐 아니라 총량관리, 일몰제, 연관규제의 통합 관리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 면제 경감 적용 권고등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관할하는 대상과 범위가 급격히 확대.
-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권한 막강
- 규제의 정비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에 대한 의견 제출, 법률, 조례의 개정 폐지 의견도 제출 가능
- 규제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직무감찰도 면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에 대비하여 규개위 위원은 인사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

(5) 행정규제 발생 비용 산정 방식

- 해당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만 초점
- 정확한 타당성과 근거 없이 규제완화 라는 정답에 맞추식 비용분석 남발
- 규제의 대안과 그 비용.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
-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비용뿐 아니라 규제 공백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에 대해서도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7.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하여

1) 한국사회에서 규제완화가 가지는 위상

- 대륙법 국가에서는 국가가 각종 법규나 행정조치들에 의해 사전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사법부는 피해구제에 있어 원상회복에 그친다고 인식
- 영미 법계 에서는 개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여 사전에 규제하지 않아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 소송으로 사후적으로 사법부에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
- 한국은 규제를 주로 행정작용과 연관하여 이해하고, 주로 경제생활에 국한하여 보고 있음. 규제의 보완이나 합리화 보다 규제의 감소나 폐지에 중점
-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 소송제도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위반 시 처벌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2) 한국 헌법에 비추어 타당한 규제개념의 정립이 필요

- 규제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
- 규제 자체가 우리 헌법상의 시장 경제 질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님.
- 규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관념
- 규제는 헌법 제 37조제2항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
- 규제와 규제개혁 전반에 영미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3) 규제완화 제도개선 방안

안전 사회 건설은 “규제완화 중단, 위험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고용 중단, 책임자 처벌 및 안전의 노동자 시민 참여 강화” 등이 근본적인 방안임.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중의 하나인 규제완화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

(1) 기업규제완화특별 조치법 폐기 및 개정

- 안전사회는 정부 안전대책처럼 “안전진단, 안전 점검, 매뉴얼”을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또 다른 기업의 설립으로 해결될 수 없음. 각 사업장과 공공시설에 ‘안전관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가스안전관리법을 비롯한 각종 안전관련법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를 무력화 시킨 ‘기업규제완화 특별 조치법’이 폐기되어야 함.
- 특조법을 폐기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겸직을 금지하여 위탁대행을 금지“ 하여 사업장 안전과 공공안전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복원, 구축하여야 함.

(2) 안전규제 완화 복원 및 규제완화 중단

- 이미 수차례의 연속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내구연한, 과적, 1인 승무, 수직증축’을 비롯한 각종 안전규제완화를 시급히 복원해야 함
- 정부가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각종 안전진단과 점검 결과 및 관련 규제와 기준을 공개하고, 각 사업장과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완화를 분석하고 복원하여야 함.
- 철도, 의료 민영화, 영리화를 비롯한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적으로 중단하여야 함.

(3)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철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전면 개혁

- 자본의 탐욕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철회하여야 함
- 규제 개혁의 대상과 범위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 방안이 제출되어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가 노동, 시민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면 개혁되어야 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합리적이고 독립적이며 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발제2]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기업 돈벌이 방안이 안전 대책으로 둔갑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I. 들어가며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

시대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방안으로 모색하느냐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다른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시대에 살고 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을 풀어야 한다.

세월호의 질문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전은 어떻게 취급받고 있나?’, ‘우리 사회에서 안전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안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이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왜 존엄하게 대하지 않지? 도대체 무엇이 안전한 삶을 가로막고 있지?’ 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세웠지만 그 대책이 허공을 맴도는 이유는 이러한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존엄함보다 지켜야 하는 것, 다시 말해 자본의 이익, 국가의 기득권 유지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와 이윤에 내맡긴다.

그리고 그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이윤을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면 인구들이 죽도록 방치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생명에 무능한 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다. 세월호 사건은 그 한복판에서 일어난 참사이다. 따라서 제대로 질문을 던지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벌어진 환풍구 추락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새로운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로서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건물을 만들 때 환풍구가 버틸 수 있는 하중에 대한 안전기준도 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만들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지하철 환기구 덮개는 1㎡당 350~500kg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지만 아파트나 주택 등의 환기구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 2012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전관리 규정을 정부는 올해 3월 10일 ‘최대 관람객수가 3000명이상의 지역축제’에만 적용하도록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이 바뀌었다.¹⁾

세월호 참사 이후를 모색하기 위한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흔히 ‘침몰은 자본이, 참사는 정부가’라고 표현한다. 세월호 침몰은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자본의 이윤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세월호 침몰이 참사로 변한 것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또는 밝히지 못한 무엇 때문에 구조하지 않은 탓이다, 라고. 침몰과 참사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나누고 이것이 단순 재난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본과 국가가 공유한 책임-공모를 덜 드러낸다. 그들이 공모한 것은 기업의 이윤이었고 수단은 규제완화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게 아니다. 왜 그들은 세월호 탑승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그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지 아직 모른다. 다만 그들이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참사를 낳은 구조적 문제, 정책방향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참사 이후에 참사를 낳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의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안전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의 존엄함과 만나야 하는 지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본주의적 안전 개념과 결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안전은 인권과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세월호가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침몰했고 그것이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될 때 해결방안도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으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해태하고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진상규명의 어려움으로 세월호 참사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와 개입 정도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1) 개정 전인 2012년 안전매뉴얼에는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안전매뉴얼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포괄적용이 가능해 안전교육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에 안전통제선도 설치할 수 있었으나 현재 안전조치할 근거가 지자체에 없어졌다. (2014.10.22. 국정감사, 진선미 의원 질)

그로 인해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국가권력의 민주적 민중적 통제방안, 국가정보기관의 문제 등에 대해선 세월호 이후 안전대책에서는 다루기 어렵다.

국가권력의 비민주성과 비밀주의가 존속하는 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바꿀지, 위협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스스로 대처할 수 없기에 안전대책에 들어갈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다룰 수 없다.

세월호가 침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명박 정부부터 꾸준히 한 증개축 허용과 선령 연한 등 안전 관련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을 위탁받았던 한국선급의 부실한 검사²⁾이다. 그리고 그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졌다.

최근 완화된 선박 관련 규제 완화 자료:해양수산부, 박남춘 의원

내용	시행
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여객선의 풍압기준 완화	2009년 1월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 완화(25년→30년)	2009년 1월
카페리 과적 및 적재 기준 완화	2009년 1월
여객선 엔진개방검사 완화(7000시간→9000시간)	2009년 2월
2시간 미만 운항하는 선박은 위치발신장치 설치 면제	2010년 6월
항해시간 3시간 미만은 입석으로 승선 가능	2011년 1월
점검대상 선박 선령기준 완화(15년 이상→20년 이상)	2011년 1월
선장이 선박의 안전관리체계 부적합 보고 의무 면제	2013년 6월
선박 최초 인증심사 때 내부 심사 면제	2013년 6월
컨테이너 현장 안전검사 대신 서류제출	2014년 1월
선장휴식 때 1등 항해사 등이 업무 대행	2015년 1월
에인선은 일반 선원 야간당직 의무 폐지	2005년 1월
항내에서 선박 수리 허용	국회 상임위 통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항구 출입신고 면제	국회 상임위 통과

그리고 침몰이 참사가 된 것은 국가가 재난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탓이다. 사고를 인지하고도 세월호 탑승자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던 해경³⁾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혼선과 전문성 부족 문제점⁴⁾이 있다는 것이 부실한 국정조사

2) 세월호는 2013년 4월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전 3월까지 6번의 월례점검과 6번의 특별점검을 받았다. 월례 점검의 경우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가 하도록 되어있지만, 특별점검의 경우 해양경찰과 항만청 소속 공무원이 운항관리자를 대동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와 다르게 고박장비와 구명정에 지적사항이 없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5.16. 보도자료)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해경은 해양사고 대응과 해상경비활동을 하는 경비함정 운항에 필수적인 유류비를 2010년 이후 당해 연도에 지급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유류비가 부족하자 해경이 2013년에는 해상중합 기동훈련을 4일에서 2일로 줄이고, 중대형함정 순항경비 비용을 줄이는 등 「유류절약 매뉴얼」을 시행했다. 반면 해경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계획에 없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140억을 집행함. (유류비는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101억 9,600만원)

4)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종합대책(2013.5.)에 의해 재난안전과 인적재난은 방재청이, 사회재난은 안행부가 총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적 재난을 안행부로 옮기면서 재난현장 관리 인력은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다. (5급사무관 1명과 6급 사무급 1

와 검찰조사에서도 밝혀졌다. 해경은 해양사고 대응과 해상경비 활동을 위한 경비함정 운항에 필수적인 유류비가 부족하자 훈련을 줄였다. 사고 당일에 출동한 해경 경비정은 123정 한 척 뿐이었다. 목포 해경이 보유한 경비정 20척 중 7척이 동원될 수 있었는데 1정만 보냈다. 450명이 승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100t 급 경비정 한 대만 내보냈다. 그리고 탑승자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방송이나 선내 진출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알려지지 않았다.⁵⁾

II.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세월호’ 이후 정부·여당의 안전관련 회의 횟수

청와대	15회(대통령 주재 14회)
총리실	17회
당·정, 당·정·청	14회
안전정책조정회의	4회(안전행정부 장관 주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에도 끊임없이 안전사고, 재난이 발생했다. 정부는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최근 일어난 테크노벨리 환풍구 사고는 정부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임시방편이며 안전사고-재난이 발생하는 이유가 정책적 구조적 문제임을 상기시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정부 및 여당, 안전담당 정부부처가 개최한 안전관련 회의는 주요한 것만 모두 50차례에 달한다.(경향신문 10.22.)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전체적인 안전대책이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세월호 이후 정부 안전대책은 구체적인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방향은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8월 26일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

명). 게다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사고 대책본부가 급조되면서 신속한 구조 활동보다는 서류보고체계가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으로 판명됐다. 국무총리 비서실은 대책본부를 만들었다고 보고했으나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대책본부를 구성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결국 대책활동을 총리실에서 하지는 않았으나 중대본의 독립적 활동에 보고만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 5.23. 김기식 의원실 보도자료)

5)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던 날 공중파인 KBS MBC는 실제 수중 수색 작업에 투입한 잠수사는 실제 16명에 불과했으나, 해경이 제공한 육해공이 총동원된 입체적인 구조작전이 이루어지는 화면을 반복해서 내보냈다. 연합뉴스는 9일째인 4월 24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한 소조기가 이날로 끝남에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문화재청 해저발굴단 등 구조대원 726명이 동원됐고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의 장비가 집중 투입’이라고 보도했다.

방안」의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5월 19일 대통령 담화문, 8월 26일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 9월 2일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그리고 9월 23일 이러한 정부대책을 구체화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보도록 하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은 ‘국가안전처 신설과 안전산업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규제는 ‘악’이라는 규제에 대한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안전대책이 나오다 보니 안전대책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 기업의 이익 보장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에 안전관련 규제완화도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인지 주요 안전관리 분야에 노동안전(산업안전)이 빠져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과거 안전대책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노동안전이 보장될 때 시민들과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데 주요한 부분을 뺐 것이다.⁶⁾ 정부가 이번 참사를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부족만으로 볼 때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어진 참사가 말해 준다.

사건	규모	문제점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5월26일)	8명 사망, 지하 1층	CJ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등을 작동할 수 있는 긴급 전원 시설도 차단한 채 공사.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에 공사.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자인 공사감리도 비상주 1인만 지정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5월28일)	21명 사망, 8명 중경상	새벽에 화재 발생 5분 사망. 4656㎡ 규모의 2층짜리 별관에는 70~80대 환자 34명에 간호조무사 1명 -발화 시점부터 소방대원 도착시간 6분 동안 화재로 유독가스로 사망 -스프링 쿨러 없음. 신경안정제 과다. 손발 결박 흔적 ⁷⁾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10월 17일)	16명 사망, 11명 중경상	-환풍구 안전 관리 규정 없음 ⁸⁾ -하중을 이기지 못하도록 설계했으나, 공연 중 안전요원이나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표지판 없음

6) 10월 22일 국정감사 때 새민련 우윤근 의원은 재난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등을 다루는 안전사회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누락시킨 산업안전이 포함됐다.

7) 요양병원의 인력기준, 화재안전 기준 작년년부터 요양병원의무인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요기관 평가 인증원은 요양병원 인력 기준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두 인증을 해주고 평가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화재 관련 인증내용의 경우 세부 조사 항목을 보면 대부분 계획과 교육 여부 정도만 확인하고 있다. 8월 21일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8)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서울시는 14일간 지하철 2,400여 곳, 지하상가 70여 곳, 주차시설 110여 곳 등 시내 총 2,800여 환기시설을 안전점검하기로 함. 야외 지역축제가 열리는 행사장 10여 곳은 종합안전점검 하기로 함.

1. 안전산업 육성방안은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 안전을 '산업화'하여 기업 이익을 보장하는 '기업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8월 26일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 후, 정부 부처들은 안전산업육성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⁹⁾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가 함께 안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안전산업육성지원단」을 만들었고,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도 안전산업을 육성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가 함께 안전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안전산업육성지원단(이하 지원단)」은 9월 19일 1차 회의를 했다.

하나, 안전관리 민간 위탁을 포함한 기업이윤 창출 위주

8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민간 재난보험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는 재난의 결과와 회복을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자 보험회사 이윤을 챙겨주겠다는 뜻이다. 또 민간의 방재기능 강화한다며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 강화한다며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위탁행정 기관들의 부실한 안전 감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월호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민간기구인 해운조합에 위탁해서 부실한 안전점검을 했던 사실을 잊은 듯하다. 그동안 여객선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민간으로 넘어가 선박안전점검은 한국선급이 하고 안전운항관리는 한국해운조합이 했다. 그러나 점검 대상인 기업에게 점검업무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갑을관계에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기대하기 어렵다. 화재보험협회가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을 맡긴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포기하는 일이다. 결국 세월호를 명분으로 보험사와 보험협회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발상이다.

9)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해 왔던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도 민간 전문업체를 참여시키면 일자리창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상정하고 있다.

III. 국가 안전투자와 안전산업 육성

11

3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5대 과제

수요 측면 : 시장 형성 촉진		공급 측면 : 산업역량 강화		
①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유도	②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	③ R&D 확대와 인력 육성	④ 新 산업화와 해외진출 여건조성	⑤ 안전 금융·보험 산업 발전
■선도적 공공투자 · 안전투자 예산 확대 · 학교 등 사회·생활 기반시설 우선투자 ■민간투자 활용 · RTO/RTL 도입 · 안전진단 등 민간기업 참여 확대	■기준·규제 선진화 · 안전기준을 글로벌기준으로 조정 · 안전규제 정비/보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강화 · 법규 실행력 제고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R&D 확대 · 안전 R&D 투자 확대 · 핵심기술 집중투자 · 안전기술(산업) 분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 정부 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한 단기·중장기인력양성 · 대학 및 전문기술 교육 지원	■상품·서비스·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 · 정부구매 확대 및 테스트베드 지원 · ODA 지원 활용 · 해외인증 획득 및 수출상담 지원 등 ■대·중소파트너십 · 공동기술개발 확대 · 대·중소협력 모델발굴을 통한 대기업 참여촉진	■의무보험 확대 · 법정 의무가입 확대, 벌칙조항 명문화 ■민간금융상품 도입 · 민간 재난보험 개발 ■안전투자펀드 활용 · 차질 없는 조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우선 투자

심지어 9월 19일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착수 회의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를 보면 정부의 안전산업이 무엇을 보장해주려는지 드러난다. 민간보험상품 개발, 보안장비 개발 외에도 실시간 원격의료라는 의료법 개정의 쟁점인 것을 기정사실화 하여 안전산업에 집어넣었다. 원격의료는 재벌이 운영하는 삼성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의 이익을 보장할 뿐 실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병원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원격의료비 부담만 가중된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산업으로 둔갑했다.

9

〈참고4〉 안전산업 영역 예시

	기기·제품	서비스	ICT융합
방법	방법기기, 출입관리장치 등	시설/행사, 운반경비 등	홈 시큐리티 장치, U-City 방재도시 등
방재	소화설비, 방화·방염 자재, 방재로봇 등	구조물 진단, 재난교육, 손해보험 등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 방재시스템
정보보안	보안장비, 정보보호 제품 등	정보보안 컨설팅, 보안 관리·운영 등	빌딩 종합 관리시스템 등
생활안전	안전운전 자동차 부품(스마트카), 안전 산업 설비 등	도로안전, 에너지안전 관리, 위해식품 안전도 인증서비스	실시간 건강관리 원격의료 등

이러한 기조에서 9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도 안전산업 육성이 담겨 있다.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방안도 공공부분 안전투자 확대를 통한 시장수요 창출과 안전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안이다. 이는 결국 정부 예산을 안전에 투입하고 확대하더라도 안전을 시장수요처럼 운용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5차 경제자문회의의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안전을 상품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안전이 산업화하여 이윤 확보의 수단이 되고 소득(돈)의 유무에 따라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꼴이다.

둘, 정부는 ‘안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산업’에 투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안전예산안에 잘 드러난다. 안전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방안에는 ‘안전’이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산업과 수출’이 우선시 되고 있다. 즉 안전산업을 육성시켜 수출 분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먼저 국산 장비 구매 등 선도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내수산업 육성하기로 하면서 소방헬기를 바로 내년부터 국산 헬기(수리온)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수입헬기와 비교할 때 국산헬기가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산 헬기를 구매해야 국내 안전산업을 육성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안전 관련 첨단제품 개발과 그를 위한 한국형 소방장비의 해외 수출 장려 등 지원(5→6억원)액을 확대하는 안도 그렇다. 더욱 문제는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한다며 ‘안전투자펀드(‘14~’17년 5조원 조성, ‘15년 500억원 출자)’ 조성하여 기업에 대출하거나 직접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기업이 이익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했던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지원안만 나온 꼴이다. 그 외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발의한 크루즈산업육성법안¹⁰⁾도 안전관리 대책도 없이 해수부장관의 업무를 민간이익단체인 크루즈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수대교 건설업 관련 규정강화가 어떻게 건설업 부양으로 이어졌는지 기억해야 한다.

셋,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책임 묻지 않아

이러한 안전산업 육성안이 더 문제인 이유는 안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높인다고 명분을 세웠지만, 기업이익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했던 기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기업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안전 관리자와 함께 기업주를 처벌하던 양벌규정이 완화¹¹⁾되어 기업주들은 법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를 형식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벌규정은 개인(노동자)의 잘못에 대해 법인(사업주)도 처벌받게 해, 관련 의무를 더 충

10) 이 법안에는 해수부장관업무를 민간이익단체인 크루즈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한 선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크루즈선내에서 일하는 공연종사자들을 선원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선상카지노 허가, 국적 크루즈선사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 육성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도 추진하고 있다.

11) 2008년 11월28일, 국회 의안과에는 정진석, 진수희, 이명수, 김종률 등 당시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네 명의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361건이 접수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양벌규정’ 조항의 개정을 담고 있다.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일제히 달아놓은 것이다

실히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세월호 참사의 일정한 책임이 있는 (주)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에게 맞춰지고 있지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가능한 죄목은 횡령, 탈세, 배임혐의 뿐이다. 실소유주에 대한 살인죄 및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재해 및 대형사고의 경우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¹²⁾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대책에는 빠져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하급 책임자인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000~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게다가 기업이 산업안전법을 위반해도 80% 시정조치이다. 시정조치라고 해도 사후 현장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도 하지 않는다. 중대재해 2,290건 중 징역은 2.7%이며 실형은 없다. 57.2%가 수백만 원 벌금형이다. 사업주가 안전관리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 설비 등의 구체적 안전조치는 불가능하다.

안전은 기업의 이익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는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이 대기업이라는 사실에서도 분명하다. 당진 현대제철소,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 모두 대기업이었다. 작년 1월 28일 삼성반도체 화성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00여건이 넘게 법 위반을 했다. 당시 종합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서류상의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호흡곤란을 부를 수 있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정에서 노동자 자신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위험성조차 모른 채 작업을 했다. 가스가 새 나와도 감지할 수 없는 감지기, 관리대상 물질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반도체 공정의 설비가 허술했다. 삼성과 대림은 안전과 환경에서 우수 평가 받은 자율안전, 녹색환경 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2) 하청업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사업주가 산안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림산업의 가스폭발사고(6명 사망, 11명 부상), 삼성 불산유출사고(1명 사망, 5명 부상), 청주 SK 폭발사고(8명 사망) 등에서 원청 사업주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1년 7월, 4명이 사망한 이마트 냉동설비 질식사고의 경우 원청업체가 받은 벌금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2.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 등으로는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 출범부터 안전을 강조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안행부의 사회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안행부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대규모 재난안전에 있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대본을 이끄는 안행부 장관은 그러한 전문성이 없었고 해경 수뇌부조차 해난구조경험이 없는 상황이 구조를 단 한명도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대본의 총괄조정관과 중대본 차장은 재난대응전문가가 아닌 안행부 출신 행정담당자들이었다. 중대본이 침몰사고 상황 및 구조자원 파악, 행정적 지원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은 감사원 결과에서도 지적됐다(2014.7.8.). 그러한 비판이 일자 안행부의 안전기능을 분리하여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의 정의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했지만, 현대 사회의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분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복합재난의 형태로 나타난다.¹³⁾ 댐 건설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발전정책이 자연재난을 초래하기도 하며 구미 불산누출 사고처럼 정부나 기업정책이 만들어낸 위험과 재난을 생각하면 재난을 분리하기 어려우며 대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난안전은 종합적이어야 하며 일상적 안전 관리와 대응훈련, 전문성 확보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에서 보여지듯 원전 관리는 재난 관리와 떨어질 수 없다.¹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과정에서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조직이 어떤 명칭으로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콘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역량, 사고에 대비한 훈련과 안전 점검 등이 함께 가지 않으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경험과 같은 간판 바꾸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5월 19일 대통령 담화를 통해 발표된 안전대책은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으로 9월 23일 발표된 방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해경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

13) 재난안전관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2.2.22, 2013.3.23 제 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시행일 2014.2.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14)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내려왔으며 새로 생기는 국가안전처도 마찬가지로이다.

백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일자 해경을 해체하는 처방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임시방편이다. 앞서 말했듯이 안행부에 중대본을 만들었으나 방재청의 재난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제대로 이관되지 않으면서 안행부는 실질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위험관리 역량을 보면 대부분의 부처 공무원들이 위험관리의 일반절차로서의 위험 확인(risk identification),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대응방안 마련(risk treatment)의 공식 절차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¹⁵⁾

세월호 경험을 하고도 해경이 늑장대처를 했다고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에 흡수한다면 전문성과 실질적인 구조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방만하게 될 것이다. 방재청의 해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보니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내용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가 다른 부처와 달리 장관급으로 신설되는 형평성 문제, 장관급이라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한다는 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로 두는 것이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개조 방향과 부합하는지 등이다.

국가안전처의 신설은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와 그에 힘을 실어줄 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 통합적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부처 간 권한 관계와 협력과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충의 일원화된 재난 안전관리부처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통합적 관리가 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카트리나 재해참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미국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911테러이후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명령과 통제 시스템을 강조하는 방향이 강화돼, 22개의 흩어졌던 기관을 국토안보부를 신설해 하나로 통합했다. 국토안보부는 위기 관리의 초점은 자연재난보다는 테러리즘과 안보위협에 맞춰 FEMA(미 연방 재난안전관리청)가 국토안부부 하위부서로 갔다가 허리케인의 카트리나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위기관리조직들이 국토안보부로 통합된 이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업무관계가 상당히 약화되어 위기관리 대응역량이 부실화되었다는 비판이다.¹⁶⁾

따라서 통합적 재난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처로 신설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¹⁷⁾ 정부 대책에서 재난안전에 대해 분산된 재난안전관리(중대본과 중수본)를 총괄하

15)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ERM 위험관리 절차의 공식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9.)

16) 2006년 10월 4일 부시 대통령은 [포스트 허리케인재난개혁법]에 서명하여 국토안보부의 재난대응 기능의 분산에 FEMA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9.)

17)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

고 재난안전관리의 책임을 국무총리로 하여 정부 책임성을 높인 것은 의미가 있다.¹⁸⁾ 하지만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진다는 방향성은 있으나 재난 및 안전사고에서 다원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전문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재난위기관리 기관을 모두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는 것은 조직만 비대해져 효율성과 전문성, 현장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¹⁹⁾과 해양경찰청의 현장위기 관리능력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둘 때 강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전체 소방공무원들은 대부분인 99%가 지방직(지방공무원 3만9197명 과 국가공무원 260명)에 속해 있고,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 그 모든 부분을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중앙정부는 소방예산의 1.7%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는 ‘특수기동구조대’의 설치를 내놓았다. 현장 재난대응 인력 문제²⁰⁾를 공백으로 두고 재난 컨트롤 타워 부처만을 이동·변화시키는 것은 소관부처의 명칭 바꾸기에 불과하다.²¹⁾

현재 한국의 재난안전시스템은 중앙집중적 명령과 통제 중심의 시스템이다.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재난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그것이 전문적인 현장지휘를 막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고가 벌어지는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지방)의 재난대응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부처 간, 민간기구 간의 거버넌스가 충분해야 한다. 한국처럼 지방자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쉽지 않다. 2013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2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자체는 안전과 관련한 인력이 부족하고,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노동자, 시민의 참여보다는 지역의 유지 등의 간판 정도에 지나지 않다. 지자체별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그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및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기금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장중심의 지휘권 보장방안, 그리고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안전관리의 통합은 기관의 통합의 아니라 부처 간 상호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방식의 계층적 관료주의를 넘기 위한 현실분석이 빠져 있다. 현재 소방관들의 재난지휘는 소방방재청장(중앙)과 시·도지사(지방)로 이원화되어 있어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혼선이 있으며, 보고의 중복(안전관리본부, 안전총괄과, 상황실 등)을

기 위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소방관들이 재난안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들의 역량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지는 없다.

18) 이명박 정부 이후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줄어든 상황에서 국가안전처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인지는 의문이다. 혹여 대통령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안이 아니기를 바란다.

19)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이후 2004년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설립되었다.

20) 현장 지휘 책임을 소방직에 맡기고 소방직이 군과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소방직이 지방직이어서 무산되었다. 현재 신설될 국가안전처 인력 4만8000여명(소방 4만명·해경 7000명·기타 1000명) 중 소방직은 지방직이다.

21)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보부 외청으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효율화, 보고체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3.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선사의 이윤보장만을 담았을 뿐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없다.

세월호 침몰은 2008년부터 후퇴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감독(선체 및 운항 관리 소홀, 과적이나 노후선박 교체, 승무원 안전교육 미비 등)이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승객의 안전을 생각하면 출항, 과적, 설비에 대한 철저한 선박 운항 관리 행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2008년 이전처럼 안전관리감독을 하는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이 아닌 해수부에서 하겠다는 것 정도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주요 대책 중 하나인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전문화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겠다는 안은 세월호 참사 이전인 3월에 해수부가 이미 내놓은 안이다.²²⁾ 중요한 것은 해사안전감독관도 기존의 국내입출항 외국선박을 점검하던 항만국통제관들이 국내선 안전감독관을 보게 하고 ‘필요하면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적은 인원으로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연합뉴스 2014.5.8.)

더구나 연안여객선운송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면서 은근슬쩍 면허제도와 운임제도 개편(운송수입률 철폐)안을 내놓았다. 해수부는 면허제도를 개편(운송수입률 25% 폐지)하여 민간선사가 들어와 경쟁체제가 되면 안전에 투자하지 않겠냐고 한다. 면허제도가 기존 선박제도의 수익과 독과점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대형 민간 선사가 들어오더라도 안전에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면허제도 개편은 2011년도에 발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경쟁을 제한적으로 들여와 새로운 선박의 유입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신규운송업자를 들이는 시장경쟁방안이 취지였다.²³⁾ 특히 해수부장관은 “시장경쟁을 유도해 선사를 대형화하고 우수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세사업체들은 M&A(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선비즈, 9.5.)²⁴⁾ 하지만 청해진 해운의 자산규모는 300억이 넘는데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고 과적했던

22)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현재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정)을 상호주의에 입각, 외국 선박검사기관에 개방하는 안은 이미 2013년 12월 개방전략 연구 검토되었다. 당시 세계경제 개방에 따른 방안으로 검토되었고 해상안전의 중요성에 따른 국가개인의 필요성과 국가해양력 강화에 반한다는 점에서 검토되었는데,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개방이 국가편익에 더 싸다고 나왔다. 그 외에도 화물전산발권 전면도입, 선원복지 확대 등은 3월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23) 운송수입률에 따른 면허제도는 항로 수요가 많지 않은 기존선박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주로 했고 그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되었다.

24)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photo/MD20140905030807110.daum?>

사실을 상기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공영제를 도입한다면서도 선사의 정상이운확보를 위한 운임제도 개편(혼잡비용과 유가변동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 등)을 포함시켜 시민들의 운임부담을 커지게 됐다.



2012년 「수난구호법」 개정²⁵⁾에 따라 해양안전업무가 민영화시켜 해양구조협회로 넘어가 해경의 구조 역량을 떨어뜨린 것과 비슷하다. 수난구호업무는 국가사무이나 구조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민간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2012년 8월 수난구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2013년 1월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 구조 활동에 참여 시키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과 구조작업을 한 언딘은 해경이 아닌 사고 원인 제공자인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었다.

해경은 사고 초기 출동 과정에서부터 인력과 장비의 배치, 실종자 수색,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대형 해상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 해군이 보유한 수중 수색 작업 인력은 어림잡아도 해경의 20배에 이르지만 현재 수난 구호법에 해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사실상 해양구조협회²⁵⁾라는 민간 기구에 안전업무를 맡기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25) 해구협은 언딘이 민간구조 독점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의혹이 짙다. 언딘 대표이사가 해구협 부총재이고 해양경찰청 경비 안전국장²⁶⁾과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도 부총재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해구협과 해경과의 커넥션은 견고하다. 해경 출신 6명이 해구협으로부터 연봉을 받는다. 협회가 신설(2013년) 되자마자 퇴직 해경 간부의 재취업 창구 역할을 해왔다. 꼬박꼬박 출근하지 않고도 많게는 연 6천만 원에서 적게는 1천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경이 협회 설립을 주도했다. 민간 협력 수난구조 체계를 만들겠다면서도 협회 임원을 해경 출신과 해운관련 업체와 협회 대표들로 채웠고 기존의 다양한 구조단체들 대부분이 배제했다.

안전업무의 외주화라는 기초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 서류작성과 검사 및 인증과정에서 외주화된 기관과의 결탁, 부실이 만연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정부 대책은 립서비스일 뿐이다.

4. 세월호 침몰의 원인인 '규제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규제완화가 세월호 침몰과 구조 방치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폐기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2014년 4월 15일 정부는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²⁶⁾하여 선장이 휴식을 취하면 1등 항해사나 운항장 및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하여 배를 운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원에 정규직이 아닌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²⁷⁾ 관련 시행령 내용은 '2006 해사노동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되는 2015년 1월 9일부터 적용되지만 세월호 선장은 이미 항해사에게 조종을 맡기고 있었다.

또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78호)」을 2013년 5월에 개정하여 이전에는 내항선과 외항선 구분 없이 안전관리체계의 수립과 시행을 했던 것을 구분했고, 500톤 이상의 여객선 외의 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나눴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령 84호)도 개정됐다. 선박검사와 선박수리를 위해 승선하는 기술자를 파견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2013년 8월 규제개혁과제 '내항선박 안전관리체계이행요건 완화'(「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를 통해 선장이 선박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와, 선사가 자사 선박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내부 심사를 면제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었던 과적은 육지 화물운송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안전업무와 검사의 외주화는 철도, 지하철, 가스, 인천공항,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수도 없이 반복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4월 22일 국무회의는 아파트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준공한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훨씬 많다. 수직 증축은 무게 중심을 불안정하게 하고 철근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위험하다. 얼마나 위험하면 이명박 정부

26) 선원법 개정 내용은 1)선장이 선박에 이상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앴고, 2) 선박 최초 인증심사 때 선사가 해야 하는 내부 심사도 없앴다. 3) 선박의 안전을 검사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선박검사를 비롯해 선박수리를 위해 승선하는 기술자 등을 선원에서 제외해, 정규직이 아닌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4) 선장의 휴식을 보장한다며 선장의 휴식 시간에는 1등 항해사, 운항장 등이 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선원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선원법을 개정한 것이다.

때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한 까닭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고 건설업의 성장을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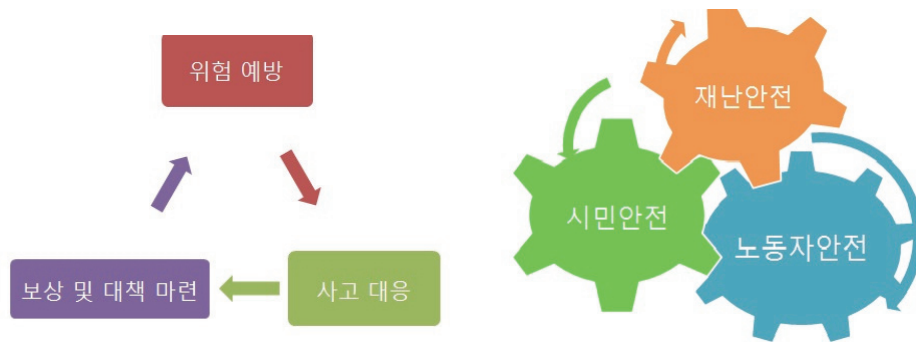
5. 노동안전(산업안전)에 대한 계획이 없다.

정부가 9월 23일 발표한 마스터플랜 중간보고에 따르면 특수재난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노동(산업)안전이 빠져 있다. ▲항공 ▲해양 ▲에너지 ▲유해화학물질 ▲통신인프라 ▲원자력으로 분야를 구별할 지라도 업무를 보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분야별 안전도 달성되기 어렵다. 특히 안전업무를 보는 노동자들은 정규직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면서 안전 공백과 불법파견 문제가 생길까봐 오히려 사고대응 훈련조차 받지 못한다. 철도공사 안전업무를 통째로 (주)코레일 테크로 위탁했는데 90%가 비정규직이다. 철도공사는 주요 업무 외주화 논란과 불법 파견 시비를 피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는 ‘안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라고 못 박고 있어 열차에 화재가 나도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 외에도 현대제철은 정몽구 회장이 당진 현대제철 3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기단축 지시 2주 만에 아르곤 질식 사고로 5명의 노동자 사망하는 등 1년 반 사이에 약 2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16,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 일하는 현장에 보건관리자는 2명 안전보건팀 투자예산 2012년 10억, 2013년은 0원이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도 노동부 관리감독인원이 적고 제대로 감독이 수행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또한 노동자의 알 권리와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큰 재난에 닥칠 수밖에 없다. 2012년 9월 27일 구미4공단의 구미 (주)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유독 가스로 마을 농작물이 타 들어가고 주민들이 후유증을 겪었다. 이후 위험물질의 정보 공유 문제가 지적되어, 화학사고 대응 시스템에 반드시 주민·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2012년엔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비롯해 9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고, 2013년에는 삼성전자 화성 불산 누출사고,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8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10일 현재까지 발생 건수가 무려 76건이나 된다.²⁸⁾

28)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2014년 10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약 86%의 기업(16,547개 기업 중 14,225 개 기업)이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 단지 관리 기본계획’에는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각종 권한과 지원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사고 대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안전에 대한 예방적 통합적 접근을 한다면 노동안전에 대한 계획이 정부 안전대책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안전(산업안전)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정부가 이를 안전대책에 담고 있지 않다.

Ⅲ. 인력과 예산 배정 없는 안전대책은 허구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임시방편으로는 우리 사회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세월호가 던진 질문에 답하면서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보다 낮게 취급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대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 안전점검과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응할 사람, 재난구조훈련에 필요한 비용이다. 한마디로 인력확보와 예산 배정이 있어야 진짜 안전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안전대책에는 인력 확보 계획이나 선원을 비롯한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하는 방안은 빠져 있다. 심지어 앞서 언급했듯이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증원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호 1년짜리 계약직 선장, 여객선 운항의 핵심인 갑판부·기관부 선원 17명 중 12명이 비정규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적어도 안전 관련 직종이나 업무의 비정규직을 금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안전예산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재난안전 부분의 예산은 거의 그대로다. 소방방재청의 안전예산이 1조47억 원으로 27.1% 증가한 것은 긍정

적이나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과 관련된 예산이 많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부족하고 시도별 편차가 심한 현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 외에도 산업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대책(예산 및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에 대한 점검과 그를 관리 감독할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는 일이 필요하다.

<참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 경과

○ 4월 16일 세월호 참사

○ 5월 7일 국무회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재해구호법 개정안 검토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해수부 소속의 안전관리감독관을 두어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시사 (연합뉴스 5,8.)

○ 5월 19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가안전처 신설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만들기로

-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
-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해경과 방재청 해체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만들기로

○ 8월 26일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

: 안전대진단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기관이 독점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교육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 지시

「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14. 7. 24일)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규모 안전점검 및 안전투자확대 방침과 연계

○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계기로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

○ 국민들이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관련 App*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신고·제보하면, * 안전디딤돌(소방방재청), 생활불편 신고(안전행정부) 등 부처·지자체별 기존의 신고·제보 관리시스템 활용. 지속가능한 ICT 기반 '안전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

○ 안전산업의 빈약한 수급기반 등 국내 안전산업의 취약점과 공공수요의 중요성, ICT와 융합화 추세 등 안전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1) 선도적 정부투자, (2) 제도개선을 시장을 형성하고 (3) 연구개발(R&D) 확대, (4) 신상품·서비스·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조성, (5) 안전 금융발전 등으로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5대 과제를 제시.

< 안전투자 예산의 획기적 확대 등 선도적 정부투자 >

<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안전기준 조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 안전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

< 안전 신상품·서비스·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 조성 >

< 의무보험 확대와 민간 금융상품(재난보험) 도입 >

○ 8월 28일 당정협의회,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하는 방안

: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

- 9월 2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이후 139일 만에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 대부분 2014년 3월, 세월호 참사 이전에 계획했던 것임.

1)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 :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키고 정부는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과징금 최대 3천만 원 → 10억 원),

2) **안전관리관련 규제 합리화** : 선박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 일체 금지, 정부검사 대행권 개방 등을 추진,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체계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기준, 화물전산 발권 제도도 10월부터 전면도입, 제복 착용 의무화,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 선장의 승무기준 상향 및 정기 적성심사 강화, 승선 근무 예비역(군복무 대체) 배정방안을 검토 추진

3) **연안 여객운송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 : 안전관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낙후된 연안여객운송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도입(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 노선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 선박 현대화 지원 제도 도입, 면허제도와 운임제도 개편을 통해 63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진입장벽(운송 수입률)을 철폐하여 민간 선사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 개선

4) **해양 안전문화 생활화** : 선사 경영자(CEO) 안전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선사 안전 정보 공개 등 승객참여형 비상대응훈련 시행, 학생 안전교육을 위해 “해양안전교실” 운영,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 지정

- 9월 4일 정중섭 안전행정부 장관,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 발표

[1] 과도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는 안행부(제2차관), 방재청(차장), 해경청(차장)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 상황실 통합과 재난통신망 구축 및 보완
- 안행부의 중앙안전상황실(사회재난)과 방재청의 재난상황실(자연재난)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해경의 상황관리 시스템을 연계
- 재난통신망 구축은 지난 7.31일 미래부에서 기술방식을 확정, 현재 안행부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 현장 대응역량 강화

-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9월~)해 기동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도 정례화(매월 1회)
- 해양사고-합정을 사고 다발 해역에 전진 배치하고, 순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병행
- 국가안전처 신설과정에서 심해(40m 이상)에서의 현장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구조단(남해청)을 확대해 서해와 동해 특수구조대를 설치. 전국 모든 파출소에 고속구조정 도입*을 추진

○ 9월 12일 국무조정실 주재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실무회의, 안전산업 육성 세부이행계획 발표. 6대 분야 28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 9월 18일 :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착수 회의 개최(9월 19일 회의관련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II. 국가 안전투자자와 안전산업 육성

1 안전산업 발전 여건

①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 욕구 + 국가 안전 대진단 시스템
→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 창출 가능
* 점검·진단 서비스, ICT융합, 시설물 보수·보강 및 건설, 안전 교육·컨설팅, 시설/행사 안전요원 등

② 다만, 안전산업의 특성상 초기 공공투자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
· 공공재적 특성(시장에 의한 과소 생산)과 높은 규제 의존성 등

< 안전산업의 특성 >

공공재	규제 : 공공수요 의존	ICT/파생산업과 연계
· 국가·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 정부 정책/규제 변화에 영향	· 국가 전반의 방재시스템과 ICT기술 연계의 중요성 대두
· 정부 정책의 필요성	· 공공수요가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	· 개인·기업 정보보호 요구 증가

2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5대 과제

수요 측면 : 시장 형성 촉진	공급 측면 : 산업역량 강화
① 공공투자자와 민간투자자 유도 * 선도적 공공투자 · 안전투자 예산 확대 · 학교 등 시설·생활 기반시설 우선투자 * 민간투자 활용 · RTO/RTL 도입 · 안전진단 등 민간기업 참여 확대	②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 * 기준·규제 선진화 · 안전기준을 고려한 7종으로 조정 · 안전규제 정비/보강 *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강화 · 법규 실효성 제고 · 정책적 손해배상제 도입
③ R&D 확대와 인력 육성 * R&D 확대 · 안전 R&D 투자 확대 · 핵심기술 집중투자 · 안전기술(산업) 분주체계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 정부 일자리 사업 연계로 통한 단기·중장기 인력양성 · 대학 및 전문기술 교육 지원	④ 신산업화와 해외진출 여건조성 * 산업·서비스·시스템 기업과 해외진출 지원 · 정부구매 확대 및 테스트베드 지원 · 해외인출 확대 및 수출시장 지원 등 * 대·중소 파트너십 · 대·중소협력 모델 발굴을 통한 대기업 참여촉진 교육 지원
⑤ 안전 금융·보험 산업 발전 * 의무보험 확대 · 보험 의무가입 확대, 법적조항 명문화 * 민간 금융상품 도입 · 민간 재난보험 개발	⑥ 안전투자펀드 활용 * 안전투자펀드 활용 · 차질 없는 조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우선 투자

III. 국가 안전투자자와 안전산업 육성

2 우리나라 안전산업의 현주소

① 높아진 안전요구를 산업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취약

수요 측면

- 공공 SOC 투자는 신규투자 중심으로 유지관리 지출 미흡
-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부문의 역할 제한적
- 민간수요는 법규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는 수준으로 시장 정체

공급 측면

- 투자 부족으로 안전 기술수준이 낮고 전문인력도 부족
- 자금력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 국내 안전산업의 취약점과 특성을 감안, 선도적 공공투자 및 제도 개선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전략적인 산업육성 필요

<참고4> 안전산업 영역 예시

	기기·제품	서비스	ICT융합
방법	방범가기, 출입관리장치 등	사설/행사, 운반장비 등	총 시큐리티 장치, U-City 방재도시 등
방재	소화설비, 방화·방범 자재, 방재로봇 등	구조물 진단, 재난교육, 순계보함 등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 방재시스템
정보보안	보안장비, 정보보호 제품 등	정보보안 컨설팅, 보안 관리·운용 등	별당 종합 관리시스템 등
생활안전	안전운전 자동차 부품(스마트키), 안전 산업 설비 등	도로안전, 에너지안전 관리, 위해식을 안전도 인증서비스	실시간 건강관리 원격의료 등

○ 9월 21일 : 기재부, 안전예산 발표 (안전산업육성방안 포함)

- 1) 국산 장비 구매 등 선도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내수산업 육성
 - 100% 수입에 의존하던 소방 헬기는 계약·입찰방식 변경을 통해 '15년부터 국산 헬기(수리온)로 도입하고, 첨단구조장비(수입률 100%), 사다리차·화확차(수입률 7~8%)는 향후 국산제품개발을 통해 매년 수입구매를 축소
- 2)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첨단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의 첨단소방장비 제품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형 소방장비의 해외 수출 장려 등 지원(5→6억원)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신규 2억원),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3→6억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유도
- 3)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
 - 안전투자펀드('14~'17년 5조원 조성, '15년 500억원 출자) 조성으로 안전관련 설비 투자 등을 위해 기업에 대출·직접 투자 지원
 -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민간 투자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 RTL/RTO* 방식 적극 활용(기존시설의 개량·보수·증설에 민간투자가 참여하는 방식)

○ 9월 23일 : 관계부처 회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
 목표-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정책

1.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1-1. 재난관리 일원화 및 지휘체계 강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를 신설,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 중앙·지방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 검토
 - * 소방본부, 지방해경청, 합동방재센터(환경부) 등 기능 재편 또는 연계방안
- 대규모 재난발생시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 중대본 및 중수본의 역할 정립을 통한 지휘체계 혼선방지
- 안전자원 통합관리 및 재난사고의 체계적 진단·관리
 - 민·관 보유 재난안전 자원(인력, 장비, 물자 등)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동활용 기준 마련 등 활용도 제고방안 추진

2. 현장 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

2-1. 현장지휘체계 명확화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 재난현장 일선 지휘자 및 지휘권 명확화
 - 육상은 소방, 해상은 해경에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 부여
 - 현장 책임기관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주기적 훈련체계 구축
 - 첨단장비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 설치로 골든타임 내 위기대응능력 강화
 -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
- ### 2-2. 상황정보 전파·보고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 긴급신고 전화 통합 운영으로 신고의 편의성 및 신속성 제고
 - * (예) 119, 122(해양), 117(학교폭력), 128(환경) 등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LTE 방식 자가망을 2017년까지 단계적 구축)

4.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4-1. 안전투자 확대 및 안전산업 육성

- 재난안전예산 관리체계 정비 및 투자 확대
 -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확립 및 안전예산 대폭 확대
 - 국가안전처의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R&D 총괄관리* 기능 부여
 - *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기준 수립시 재난안전분야 R&D 총괄 검토 및 의견 제시
 -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확충 및 안전투자 지원 강화
- 안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
 - 공공부문 안전투자 확대를 통한 시장수요 창출, 안전인프라 시설 및 R&D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 재난예방 차원을 넘어 미래 유망산업 관점에서 지원·육성

[발제3]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1. 왜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

○ 안전에 대해서 저희는 무심했었습니다.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할 것이고,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누군가가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며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자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게 사회가 구성되어 내 가족과 각 국민의 안전은 당연히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보니 내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것이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할 안전수칙이 돈 때문에 완화되면서도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있었는데,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시하고 개입하지 않은 것이 결국 비양심의 사회, 안전불감증의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이대로 넘어가고 덮어버리면 또 다시 선량한 국민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겪게 될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밝히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추모만 하고 잊기만을 강요하는 정부를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전의 사고에서도 똑같이 잊기를 강요한 것 같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화재사건, 대구지하철 참사,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태안해병대 캠프 사고 등 수많은 사고를 겪었지만 진실은 덮어졌고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월호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은 사고에서 단 한결음도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또 여기저기서 안전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요양병원에서, 고양버스터미널에서, 그리고 군부대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아까운 생명이 사라져갔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사고가 계속 벌어집니다.

○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경제안정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에 민생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억 속에서 저희를 지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살리기만을 이야기하니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가 벌어집니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고처럼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면 또 다른 사고가 벌어지고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는 잊혀져도 안 되고, 진실이 묻혀도 안 됩니다.

○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가에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미루고 자신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독립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데에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무관심한 나같은 국민들 탓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국민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만큼은 더 까다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국가가 변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고 싶습니다.

2. 특별법에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

○ 처음 사고시 저희는 제자식이 죽었다는 슬픔에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라는 선박의 도입부터 사고를 예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노후된 선박이 버젓이 하나뿐인 국민의 생명을 싣고 바다를 활보하게 하고, 돈을 위해 선박을 개조해도 검사기준을 통과했고, 침몰하는 시점에서도 구조는 뒷전이고 잘못을 가리려고만 하는 정부와 구조업체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나오는 재발방지 대책은 이전의 많은 사고에도 있어왔지만 허울뿐이었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도 건설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바뀌었고, 씨랜드에서 샌드위치 패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경주마우나리조트에서도 샌드위치 패널로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씨랜드 참사에서 벌어진 잘못된 인허가가 춘천 인하대붕사단에서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에서도 여전히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이미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눈감으면서 생길 피해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지금 눈을 뜨지 않으면 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시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결코 내안전도 보장할 수 없기에, 내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을 외면하고 타협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기에 그것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비록 떠났지만 아이의 생각과 의지는 저희 부모의 가슴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대한변협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세월호 특별법에 안전과 관련한 대안을 담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제2소위원회인 ‘안전사회소위원회’를 구상하고 제안했습니다.

○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주요 재난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사후대책 수립 이행여부 확인
2.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 정책참여를 통한 조사 연구
3. 다중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들을 위한 제보, 제안제도 개선 등 정책수립을 위한 활동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방지, 대응시스템, 안전정책수립 실행, 제도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과거 재난사고의 원인규명과 사후대책을 살펴보는 이유는 과거 재난사고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혹은 중간에 대책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세월호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위험한지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전에 직접 참여하고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일을 멈추고, 그 위험에 대해서 사회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사회소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연구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부모들만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해주셨던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나서고 제도도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자인 우리가 나서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토론1]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 내 자신이 기뻐지고

누군가를 언짢게 하거나 괴롭히면

내 자신이 괴로워진다.

이것이 마음의 메아리다.

마음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 마음의 바이러스〉

1. 발제문에 대한 소감

최명선 국장님의 발제문

규제개혁을 자본의 탐욕과 이에 부응하려는 권력의 의지의 표현으로 성격 규정하는데 공감한다. 김영삼 정권이후 규제 완화, 규제 해체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 좋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선박, 철도, 항공기 연한 단축도 잘 드러내 주어 좋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안전규제 해체 작업이 착착 진행됨을 느끼게 한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격과 구성이 잘 드러난다.

앞으로 이처럼 중요한 내용이 시민 사회에 잘 공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매우 쉬운 자료로 만들어져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볼 수 있고 수다 떨 소재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명숙 활동가님의 발제문

이윤을 위해 자본과 국가가 공모해서 실행하는 게 바로 규제완화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한다. 여기서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새정치연합 (구 민주당) 등 야당의 역할이다. 야당은 규제개혁을 막지 못했다. 안전규제 해체에 찬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 이들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이후의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안전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에 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람의 존엄함과 만나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규제완화에 있다는 점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기초에 변화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현 정부가 세월호 이후 내놓은 국가안전처(국민안전처)에 대한 우려도 십분 공감한다. 부처 간 이권을 조정하고 분산된 권한을 통합해 낼 수 있는 지휘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활동가님이 말한 대로 전문성과 현장성, 민주성에 기초한 효율적인 체계 확보는 필수다. 지역(지방)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부처와 민간의 거버넌스 역시 중요한 지적이다.

8월에 제안된 안전산업 육성책이라는 것도 결국 보험사 등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기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세월호 이후 내놓은 정부의 안전 관련 정책에 노동안전이 빠져 있다는 비판은 특히 중요하다. 노동안전은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의 생명권과 안전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3년 선박검사원과 선박수리를 위해 승선하는 기술자를 파견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결정이다. 안전업무를 보는 노동자들은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면서 안전 공백과 불법파견 문제가 생길까봐 오히려 사고대응 훈련조차 받지 못한다’는 현장 보고는 충격적이다.

마지막으로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안전대책은 허구라는 지적, ‘매우 공감’한다. ‘인력 확보 계획이나 선원을 비롯한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하는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것은 실행 방안이 없다는 말이다. 도입한다고 한 해사안전감독관의 경우 증원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듯한 말로 안전 문제를 비켜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안전은 기업의 이익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현상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안전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특정 기업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침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유럽 여러 나라에서 기업의 이익과 안전이 양립하는 걸 설명할 수 없다. 최근 여러 참사에서 보듯이 기업

가운데도 안전을 중요시 하지 않고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기업은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SNS가 발달한 요즘은 대형사고 한번 터졌다 하면 그 기업은 발을 못붙일 만큼 타격이 올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전에 높은 가치를 매기고 안전 대책을 꼼꼼히 챙기는 기업이 더욱 신뢰받게 되는 시대를 조만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김성실 선생님의 발제문

그동안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는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생각도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 돈을 위해 안전수칙을 완화하면서도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제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쫓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개입하지 않은 것”이 비양심의 사회, 안전불감증의 사회를 만들었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가 감시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결코 내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사회”이다. 말씀대로 “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소위원회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이전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정책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길을 열고 안전을 해치는 제도와 관행,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보장하고 다중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들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전 참사의 경우처럼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면 제2, 제3의 참사는 계속된다. 바로 그 참사를 막기 위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대한 행동에 나선 유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를 빨리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하면 안된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의 문제이기에 길게 봐야 한다.” <정지영 감독>

2.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수어야 할 원수’라는 박근혜 정부 노선의 의미는?

대선 때 목소리 높여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노선을 폐기 처분하고 기업 프렌들리 노선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규제는 악이라는 선언은 생명권을 위한 안전규제, 민생 보호를 위한 규제, 노동권을 위한 규제를 죄악으로 보는 사고의 결과다. 이윤만을 제일로 아는 기업과 안전을 제일로 아는 시민 · 노동자간의 힘의 균형이 안전규제라는 물로 나타나는데 안전규제를 약화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은 곧 기업 입장에 철저히 서겠다는 선언이다.

3. 2006년 소방방재청이 국내 최초로 만든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무용지물이 되다!

1. 제작 배경

- 1) 2006년 10월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MBC 가요콘서트’에서 11명이 압사하고 162명이 부상을 당함.
- 2) 2007년 3월 롯데월드 무료 놀이동산 개방행사에서 3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남.

2. 핵심내용

- 1) 문광부, 경찰,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6개월에 걸쳐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까지 참고하여 만들.
- 2) 실내외 구분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축제·공연·행사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 3) 체육행사, 공연,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야외 시민축제, 심야 공연행사로 구분함.
- 4)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안전 관련 전문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연, 행사장을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함.
- 5) 공연, 행사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함.
- 6) 공연행사시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매뉴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3. 세부적인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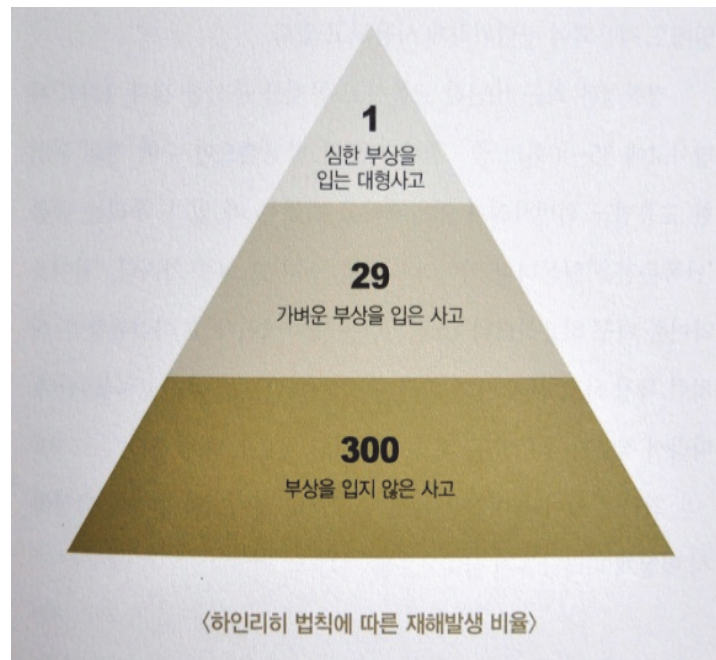
- 1)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안전 관련 부서와 안전관리요원 적정평가, 유사시 기관 역할 분담 등 사전 안전 대책회의를 한다”
- 2) “현장 검토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혼잡 예상지역, 화재취약 요인 등 위험요소를 시정 보완하고, 위험성이 심할 경우 지자체에서 공연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한다”
- 3) “관중집결 전에 안전관리요원을 취약 위치에 배치한다”
- 4) 공연이 시작 될 경우
“위험성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행사전 위치에서 공연행사장으로 변경한다”
- 5) “고층건물 옥상, 담벼락 등에 올라가 구경하는 관객들의 위험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4. 공연장 안전 매뉴얼, 선전만 요란했고 제도화는 없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용이 좋고 그 내용대로 법률로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행되었다면 판교 참사는 전혀 일어 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생긴 참사로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할 인재다. 결국, 당시 정권이 효과적으로 써먹고 만 일회용, 전시용이 되고 말았다.

안전규제는 곧 생명선이다. 안전규제를 풀자고 하는 것은 생명선을 끊어버리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런 자들이 바로 ‘암 덩어리요 쳐부수어야 할 원수’다.

하인리히 법칙 : '1대29대300법칙'으로도 불린다. 이 법칙에 따르면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29개의 작은 사건이 발생하고 300개의 사전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 대체로 사소한 초기 문제를 방치한다.
-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초기의 문제를 악화시킨다.
-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도 부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 대체로 시정조치를 취하면서 주위에 진행상황을 숨기려 한다.
-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거나 극한상황에 이르렀음을 뒤늦게 갑작스럽게 깨닫는다.
- 마지막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재난이 터지고 만다.

4. 판교와 세월호

두 사고는 다른 것 같지만 매우 닮았다.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의 안전규제 해체의 사례다. 우선 세월호의 경우 선박 연한을 50%나 증가시켰고 성남 판교의 경우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규제를 해체함으로써 참사를 불렀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는 고물에 가까운 배를 수입한 것이다. 지난 해 8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3,000명 이상의 지역 축제만 소방청, 경찰, 지자체, 주최자의 위험 항목 합동 점검 대상으로 바꾸

었다. 모든 축제가 점검 대상이었던 이전의 안전 규정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이번 판교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5. 결론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월호 이전에 ‘변화 추구 세력’이 안전과 관련하여 무엇을 했는지, 잘못하거나 놓친 건 무엇인지, 세월호 이후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금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진지하게 집단 지성을 모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시사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간에 역사를 역류시키는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의 규제해체가 줄기차게 이루어진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공공선의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규제해체’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왜 저항은 희미하고 미약하였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진보는 생명권, 안전권에 대한 문제에 무관심했다. 발제문에서 지적한 ‘안전규제 약화, 안전규제 해체’를 가져온 ‘규제개혁’이 시민들, 대중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임신부들, 노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꼼꼼하게 연구하고 요약보고서와 만화, 책을 내고 동영상을 만들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와 수단,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만약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쌍방향의 소통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 대중이 함께 주체로 참여해서 안전한 사회의 기반이 닦였을 것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은 일상적으로 우리 변에 펼쳐졌지만 민주와 진보세력은 대응하지 못했다. 안전에 대한 연구와 노력, 투쟁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누군가 해야 할 일 정도로 치부되었다. 정부나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일로 여겨졌다. 안전과 생명권 보호는 5천만 대중 전체의 일이고 노동자의 일이고 시민의 일인데 말이다. 나 자신의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친구, 내 이웃의 일인데도 말이다.

역사를 보면 대중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세력이 물줄기를 잡는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세월호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민에게 퍼졌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다. ‘변화추구세력’이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변화 추구 세력, 양심 세력이 이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실력과 열정, 헌신을 보여 주면서 대중이 주체로 참여하는 길을 열지 못하면 대중으로부터 멀어짐은 물론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부문별로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발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는 수많은 시민이 있고 시민들은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시민들 대다수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 이웃과 시민의 안전에 관심이 많다. 이들이 다양한 창의적 틀로, 알찬 내용으로, 무겁지 않은 방식으로 안전과 생명권, 생활안전 문제로 얹히고 설킨 그물망으로 연결된다면 우린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이다.

생명권, 안전권을 실현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나는, 내 가족은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함께 깊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성찰해 보자.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마크 트웨인〉

[토론2]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화학산단 노후설비 심각성

최근 이틀사이에 국내외에서 2건의 큰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국내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의 해양조선소이고 국외는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 도심 한복판이었다. 2건의 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참사의 공포에 가슴 찢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 충분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노후화된 암모니아 가스통, 석유화학공단 노후설비실태는 더 심각하다.

7월 31일 오후 4시 13분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사고이다. 현재까지 사고원인으로 수리 중이던 참치운반선에 있던 암모니아 보관 가스통이 노후화되어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누출된 암모니아로 인한 화상, 질식 등으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3월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화학물질 참사가 있던 곳으로 이번 사고로 지역주민의 정신적 충격은 더 심하다. 암모니아 누출사고로는 올해 2월,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남양주시 빙그레공장 암모니아 누출폭발사고 이후로 5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이기도 하다.

이번 사고의 위험성은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누출사고라는 점에 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설비가 수시로 점검되지 못하고 제때 교체보수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다. 일과건강은 작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대책활동과정에서 개최한 '2013년 주요산단 화재,폭발,누출 사고은폐현황 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단 주요설비 노후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노후화된 설비로 365일 돌아가고 있는 석유화학공단은 말그대로 화약고나 다름없다. 이번사고를 한 지역 조선소에서 가스통 하나가 노후화되어 일어난 사고로 치부하고 마무리되면 안되는 이유이다.

< 주요 석유화학단지 현황_자료 출처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2008 >

석유화학단지	규모(km2)	업체수	작업자수	조성시기
울산	43.9	407	27,995	1968년부터
여수	37,711	182	13,621	1970년부터
대산	8.0	13	3,420	1988년부터

현재 국내에 조성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는 여수, 울산, 대산 지역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 이 중 여수와 울산국가산단은 40년 이상이 된 오래된 설비가 대부분으로 설명회에서 발표된 현장증언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OO석유화학단지 A사 노동자 증언에 의하면

가동을 시작한지 오래된 설비 중 특히 배관, 밸브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황산 등 취급물질이 수시로 누출되고 있으며 이를 발견한 현장노동자들이 고무장갑 등을 이용, 임시방편으로 막고 처리반(공무팀)이 올 때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누출사고는 보고되거나 사고통계로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노후설비가 교체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이번엔 여기다. 썰지 모르니 조심해라.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바꿔주질 않는다.’라고 공무팀 관계자의 하소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공무팀 관계자는 ‘회사장비설비계약시 저가로 구입하니 노후가 빨리되는 것도 문제고 공장 세운지 30~40년인데 정기적으로 공정별로 설비점검하고 교체해야 하는데, 사람도 더 필요하고...그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얹히는 거예요.’라며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노후화된 설비는 잦은 정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공장 가동 시기는 물론이고 수리 과정에서 항상 사고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일이다.

여수해양조선소 누출사고도 평상시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설비 실태점검 및 보수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개의 가스통 누출사고로 멈췄다는 것이다. 누출이 폭발로 이어져 14개의 가스통이 연쇄, 폭발했다면 100여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고현장이었던 만큼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

대만 가오슝시 참사, 대한민국 여수시, 울산시가 될 수 있다.

여수사고 다음날인 8월 1일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高雄) 도심에서 1일 석유화학공단 등에 공급하는 프로필렌 공급관에서 누출, 연쇄폭발 사고가 일어나 최소 24명이 숨지고, 290여 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현지 뉴스전문 채널 TVBS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가오슝시 첸전(前鎮)구에 있는 지

하 석유화학 물질 공급관에서 누출 사고가 나 인근 하수도 통로 등으로 가스가 퍼지면서 연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고원인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석유화학공단 공급관의 이상으로 인한 누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결배관이나 밸브 등의 바스켓 등의 노후화로 심심치 않게 누출이 일어나는 석유화학공단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그렇다.

이번 사고물질인 프로필렌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 재료를 만드는 기본 원료입니다. 휘발유를 만드는 원유 분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거나 원유를 증류할 때 유출되는 나프타를 수증기 분해해서 에틸렌을 만드는 과정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화합물질이다. 보통 생활주변의 모든 플라스틱, PVC 제품에 쓰이고 있으며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 생명과 직결된 의료용 주사기 등의 제품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폴리프로필렌은 세상을 바꾼 발명품 1001 가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할 만큼 석유화학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화학산단에 존재함은 물론 화학업체인 SK가스, 효성, 여천NCC, 롯데케미칼 등은 작년 대규모 신증설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대만의 경우처럼 석유화학산단은 배관을 통해 이러한 물질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누출사고가 발생한다면 연쇄, 폭발사고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사고발생 3일만인 지난 8월 3일 일요일, 부랴부랴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9월까지 전국 30년 이상된 노후 화학설비 보유사업장 정밀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장 설립일이 3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 495곳 중 8~9월 중에 1차로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155곳, 최근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5곳, 위험설비 사업장 21곳, 맹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24곳 등 총 205곳을 조사하고, 10월 이후 2차로 나머지 290곳이 조사대상이다. 조사는 전문가 조사단을 꾸려 진행하라고 밝혔다. 아쉬운 것은 조사단이 정부관계 기관끼리만 꾸려져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하지만 발표내용으로만 보면 이번 조사는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처벌보다는 노후설비 사고위험성 진단, 해결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이번만은 사고가 나면 그때만 반짝하고 마는 보여주기식 행태가 아니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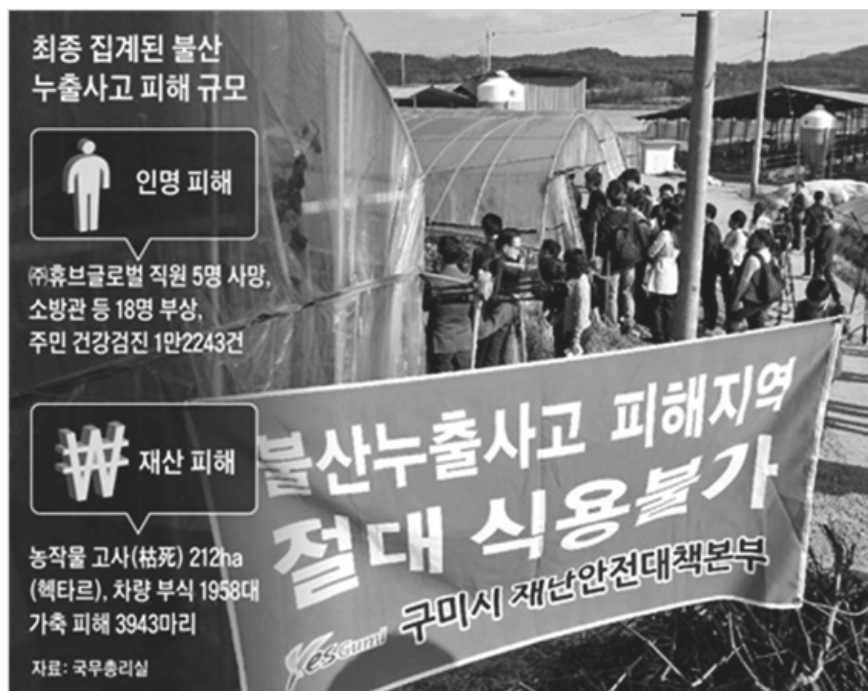
화학산단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건설플랜트노조와 화학섬유연맹은 일과건강,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이번 정밀실태조사가 실질적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노후설비개선대책의 토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2월 3일 ‘노후산단 설비실태와 개선마련 토론회’를 열어 제대로 된 대책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2.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

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 2천명 병원검진, 212헥타르의 농작물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 380억원!

2년 전 2012년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사업장에서 불산 12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불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초기대응부실로 인해 8시간 노출이 지속되며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사에 남을 만한 피해를 입혔다.

이는 취급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지, 누출물질인 불산은 어떤 화학물질인지, 정보가 없었던 소방관 18명은 열려진 밸브를 찾아 차단하는데 8시간을 낭비하며 부상을 당했다. 특히나 불산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관계기관과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대응메뉴얼이 없는 관리체계 하에서 일어난 사고는 피해를 키웠다.



<2012.9.27.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_주민보상액 380억2천만원>

당시 공중파 3사를 비롯한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이은 2013년 1월에 터진 삼성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는 사고지역인 경기도에서 ‘화학물질관리 지방조례’가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인 2013년 상반기에는 사고발생 사업장에 매출액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수십년간 개정안 내용을 준비한 전문가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없을꺼라 생각했다’는 평가를 할 정도였다. 이처럼 여론에 밀려 급히 통과된 개정안은 당연히 허술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나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처에 핵심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보장 조항이 많이 부족한 채 2015년 1월 시행

을 앞두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2년이 지난 지금, 화학물질사고는 안타깝게도 계속 증가추세이다. 2013년 한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하였다. 정부는 2013년 한해에만 주요사고가 터질 때마다 중대재해 및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을 수차례에 내놓았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정부가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차게 설립한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이후인 2014년 1월24일부터 9월5일까지 7개월간의 사고접수 건수가 76건에 달하고 있다.

일자	사고 물질	지역 및 회사	인명피해
2012.9.27	불화수소	구미, 휴브글러블	사망5명, 부상18명
2013.1.12	염화수소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없음
2013.1.15	불화수소	청주, (주)지디	부상1명
2013.1.27	불화수소	화성, 삼성전자	사망1명, 부상4명
2013.2.6	염화수소	청주, 00호텔	부상2명
2013.3.14	가스폭발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사망6명, 부상11명
2013.3.22	염소가스	청주, SK하이닉스	부상4명
2013.4.5	염화수소	안산, 00전자부품회사	부상2명, 대피 20명
2013.4.15	염소가스	울산, 삼성정밀화학	부상6명
2013.5.2	불화수소	화성, 삼성전자	부상3명
2013.5.6	불화수소	시흥, 시화공단	없음
2013.5.10	아르곤가스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질식	사망5
2013.5.18	불화수소	시흥, 트럭전복	70여명 긴급대피
2013.5.18	황산	군산, 배터리공장 황산 누출	없음
2013.11.26	고로가스	당진, 현대제철	사망1명, 부상 8명
2013.12.2	고로가스	당진, 현대제철 고로가스질식	사망1
2014. 1.31	원유,납사	여수, GS칼텍스 기름유출	부상1, 진료340여명
2014. 2.11	암모니아	남영주, 빙그레 가스누출	사망1, 부상2명
2014.3.27	이산화탄소	수원, 삼성전자 가스누출	사망1
2014.4.4	원유	울산, 에쓰오일 탱크누출	
2014.7.31	암모니아	여수, 해양조선소 가스누출	사망1, 진료21명
2014.8.22	염소산나트륨	인천, 도금공장 유출	진료22명
2014.9.13	염산	여수, 탱크로리 전도누출	사망1, 진료6명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 현황_일과건강>

상황은 이러한데 정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구미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규제개혁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규제완화의 뜻을 밝힌 것이다. 또한, 화학업체 지도점검을 1년에 4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범위는 사고가 난 현장으로 한정하며 화학물질 성분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체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에서 피해가 커진 것은 아무도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며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무

시되는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과 법제도가 유지되는 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계속될 것이다. 계속된 화학물질 사고는 제2의 세월호 참사의 전주곡이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과건강과 민변 변호사들은 2012년 5차례의 내부워크숍을 통해 2013년 주요사업으로 ‘화학물질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포럼과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알권리법안과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논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3월 20일 27개 시민사회단체로 발족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올바른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과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식 기자회견 3.20_일과건강>

○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

먼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법제도적 장치인 지난 5월 15일 국회의원 53명이 공동발의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지역사회알권리법)’은 10월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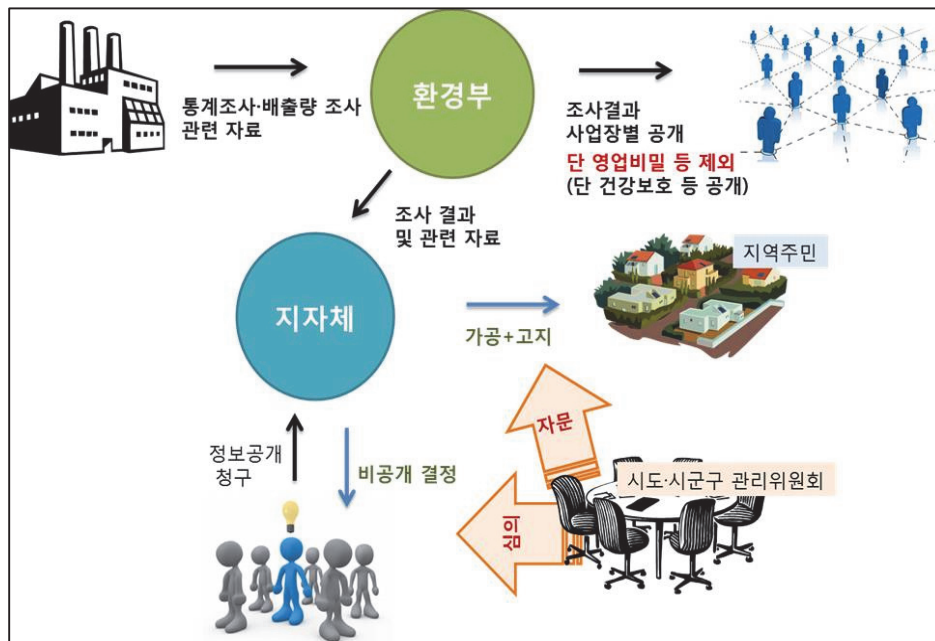
전세계 화학물질사고예방은 주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이 화학물질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느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대로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공개된 물질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시 대응체계도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사고는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사례처럼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은

첫째, 주변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한다.

둘째,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둔다. 다시 말해 현행제도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수립을 중앙환경부에서만 세우게 되어있는데 이 권한을 지자체에 줘서 도나 시차원의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된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사고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하자는 것이다.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해설_일과건강>

○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둘째로는, 일과건강을 대표청구단체로 하여 10개 단체와 2727명의 주민청구인단이 지난 5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1차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사용량 및 배출량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고 6월 23일 환경부를 상대로 2차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유통량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정보를 제외한 사용량과 유통량에 대해 기업의 영업·경영상의 비밀과 자료보호 요청자료라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내렸다.



<화학물질 정보공개소송 및 우리동네위험지도 기자회견 9.18_일과건강>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진행된 1차 정보공개 청구결과 그나마 공개된 배출량 자료는 공개대상물질과 공개기준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공개된 자료는 전국 조사대상 16,547개 사업장 중 20%에 못미치는 3,268개 사업장 정보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고시한 조사대상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조사업종(39종)과 조사 물질수(415종)와 물질의 연간 제조,사용량 1~10톤 이상(I그룹물질 16종의 경우 1톤 이상, II그룹 물질 399종의 경우 10톤 이상)으로 제한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아래표는 미국과의 보고대상 물질수와 ‘불산’ 보고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보고대상물질 415종을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유독물(646종) 및 사고대비물질(69종)을 합한 674종(41종은 중복됨)으로 확대하고 물질별 최소 사용량 기준도 크게 낮춰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분	우리나라	미국
보고대상 물질수	415종	650종 이상
불산 보고기준(사용량)	연간 150톤 이상 제조,사용 연간 1톤 이상 보관,저장	연간 45kg 사용

또한, 배출량공개 과정에서도 기업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신고하면 공개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2013년 심상정의원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자신들의 취급물질 중 92.5%를 비공개하는 것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정부가 대기업 눈치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당국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자료보호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당연

한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지난 9월 환경부를 상대로한 화학물질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



셋째로, 1차 청구결과 부분공개된 2012년 배출량 정보를 토대로 우리주변 어떤 사업장에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있으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국민들에게 손쉽게 전달하고자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10월까지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현재 프로그램 개발비 마련을 위해 소셜펀치 후원함을 통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이어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구미불산 누출사고 2주년을 맞아 세월호 국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에서 제안된 ‘물음표 도전(퀘스천마크 챌린지) 운동’은 우리주변의 화학물질 종류와 위험성, 사고대처방법이 궁금하고 묻고 싶다는 의미이며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관리체계마련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 도전자는 온몸으로 ‘물음표형태(퀘스천마크)’ 취한 모습을 인증샷 또는 영상으로 찍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올리고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지목된 도전자는 1주일 안에 ‘물음표형태’에 도전하고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하면 된다.
- 실패한 도전자는 소셜펀치(<http://www.socialfunch.org/dangermap>)를 통해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제작’ 후원에 참여하면 된다.



[토론3]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1. 수명 끝난 핵발전소 현황

- 고리1호기는 77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30년 수명만료 후 수명연장, 현재 7년째 가동 중임. 고리원전 1호기 비상디젤발전 작동 불능에 따른 소내정전 black out 사고 은폐 사건 이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고리원전 1호기 폐쇄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리1호기폐쇄 활동이 다시금 탄력을 받는 상황임. 특히 부산시장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2017년 고리1호기 폐쇄를 공약화했으며, 정부는 현재 두 번째 수명연장을 위한 준비중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17년이 아닌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음.
- 월성 1호기는 82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수명이 만료되었으나 법정 계속운전심사기간 18개월을 훌쩍 넘어 5년째 심사 중임, 지난 10월 4일, 계속운전 심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심사를 마침. 11월 원안위 31차 회의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수명연장이 되더라도, 수명만료 직후 10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대 7년 가동이 가능함.

2. 객관적 상황 및 향후 주요 일정

- 수명연장금지법안 발의 관련 :
 - 찬성의원 60명, 새누리당 전무
 - 세월호 350만 서명, 특별법 발의도 쉽지 않은 상황
- 고리1호기 향후 절차 :
 - 2014년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폐쇄 의향서 제출 : 폐쇄 절차 진행
 - : 한수원, 고리1호기 폐지의향서 제출 압박운동
 - 2015년 6월, 2차 수명연장 제출 시한
 - : 한수원, 고리1호기 수명연장 신청 반대 압박 운동
 - 2017년 6월, 수명 만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 월성1호기 향후 절차
 - 스트레스테스트와 수명연장 심사 결과에 따라 폐쇄여부 결정

- 주요 일정
 - 2014년 ?월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신규원전착공시기)
 - 2014년 12월 :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및 수명연장심사 발표(원안위)
 - 2015년 3월 11일 : 후쿠시마 4주기
 - 2015년 6월 :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제출 시한
 - 2016년 3월 11일 : 후쿠시마 5주기
 - 2016년 4월 : 국회의원 선거
 - 2016년 ?월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신규원전 착공시기)
 - 2017년 12월 : 대통령 선거

3. 2014년 하반기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가. 2014년 하반기 고리 1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한 전국집중행동(붙임자료 참조)

- 일시 : 2014년 11월 15일(토) 오후 14:00~17:00
- 장소 : 부산일대
- 서울지역 출발 버스 있음. 참가비, 일정 등 자세한 상황은 10.27 이후 홍보 예정.

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 제안 배경
 - : 10월 4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심의.
 - :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계속운전심사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됨.
 - : 수명 끝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단순히 고쳐서 더 오래 사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들이 더 큰 위험을 부담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나,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에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활동들의 전개가 필요함.

4.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 2016년, 2017년 총선과 대선시기에 앞서 지역구 및 정치권에 탈핵을 주요 공약화, 의제화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함.
- 탈핵을 희망하는 시민들 역시 일상적인 지지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유권자로서 자각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탈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 필요함.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된 여러 각 단위들의 성격, 대상에 맞는 다양한 기획들을 통해 다양한 연령, 계층이 일상적으로 노후원전 이슈를 접하고 나아가 주요 선거에 직

접적인 투표행위로 탈핵 의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활동들을 2015년 활동 계획시 반영할 것을 제안함.

나. 활동 예

- 고리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수명연장 금지법 마련을 위한 서명운동(진행 중)

: 서명 취지, 서명용지 제공 가능

- 수명 끝난 핵발전소 이별여행

: ‘Good bye 월성 1호기’, ‘Good bye 고리1호기’ 여행

: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노후 핵발전소 주변 답사 및 주민간담회와 더불어 지역 문화, 역사를 함께 이해할 수 있음. 단지, ‘바닷가의 핵발전소 부지’가 아닌 사람과 자연, 역사, 문화유산의 가치가 공존하는 곳을 발로 걸으며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일정.

: 집회 형식을 벗어나 감성적인 접근으로 가족, 동호회 등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음.

- 탈핵 강좌

: 활동가, 회원, 주부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탈핵 시리즈 강좌.

: 커리큘럼, 강사 풀 등 제공 가능

- 수명연장금지법 마련에 대한 무응답 의원 지역구 압박 활동

: 지역구 의원실 앞 1인시위, 서명운동 등

: 지역 사회 네트워크와 수명끝난 핵발전소 폐쇄 입장을 요구하는 팩스, 전화, 메일 보내기 캠페인 등.

: 주 또는 월 1회를 우리지역에 탈핵, 노후원전 폐쇄를 알리는 날로 정해 정기적인 홍보 진행 등

-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4주기 행사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 일시 : 2014년 3월 14(토)

: 장소 : 서울시청광장(미정)

인자 고마가라 고리1호기

고리 1호기가 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낡은 고리 1호기가 수명 재연장 포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올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모아갈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15일에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전국집중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4개의 그룹이 부산의 각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부산 시내를 도보를 거쳐 이동한 후, 송상현 광장에 모여 본행사를 진행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전례없는 1천명 폐창을 선보입니다.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를 놓고 1천명이 모여 하나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100명의 선창단과 준비팀이 사전에 연습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11월 15일로 가는 길목에는 총 10회에 걸쳐 <시민이 묻고 시민이 답한다> 집담회가 진행됩니다. 반핵대책위를 포함한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시민공원에 모여, 고리 1호기에 대한 생각을 주제별로 나누고 그 내용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행사들이 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힘은 행사당일 큰 목소리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수명재연장 포기가 확실해질 때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많이 모이고, 더욱 커지도록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1. 개요

- 제목 : 고마가라 고리1호기
- 일시 : 2014년 11월 15일(토) 오후 14:00~17:00
- 장소 : 부산일대, 송상현 광장(예정)
- 주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 진행방식 : 도보와 본행사로 구성. 4개의 그룹이 각 출발지에서 집결, 도보로 이동해 두 개의 포스트를 거쳐, 행사장에 도착. 본행사를 진행
- 일정
 - 14:00 출발지 집결 및 출발 (14:30 1포스트 도착/ 15:10 2포스트 도착)
 - 15:50 행사장 도착
 - 16:00 본행사 시작.
 - 17:00 행사 종료, 대시민 캠페인

그룹	집결지	1 post	2post	집결지
A태양	수영사적공원 주차장(수영)	병무청 (1km 지점)	연제이마트 (3km)	송상현광장 (4.5km)

B바람	동래역 분수광장(동래)	세병교 (1km 지점)	부산시청 (3.0km)	송상현광장 (4.5km)
C자연	자성대공원 (범일)	사학연금(범내골역) (1.3km 지점)	서면주디스 (2.4km)	송상현광장 (4.2km)
D탈핵	어린이대공원 입구(초읍)	부산시민공원 (1.8km)		송상현광장 (3.2km)

2. 도보 프로그램

※ 출발인원 : 100명 / 조직정도에 따라 출발지역 조정 및 서울, 울산, 경남 인원 배치

1) 집결지 미션

- 14:00 [담당자] 인사나눔, 프로그램 안내
- T셔츠 판매, 물품배부
- 조별작업: 총 3개조로 만든다.(앞조-중간조-뒷조), 조별 깃발 및 피켓 제작
- 14:20 출발

2) 이동 중 미션

- 선창단을 따라 노래 배우기, 구호 외치기
- 현수막, 깃발, 피켓 들고 이동, 스티커 활용

3) 1post 미션 : 노래부르기 (선창단 주관)

- 휴식
- 시민들 앞에서 떼창 연습
- D탈핵그룹은 시민공원에서 이후 미션을 수행한다.

4) 2post 미션 : 구호따라하기 (풍물패 주관)

- 휴식
- 시민들 앞에서 악기를 활용한 구호따라하기

5) 행사장 도착

3. 행사장 프로그램

15:50 장내정돈, 공연1 (스카웨이커즈, lock 페스티벌, 예정)

16:00 개회선언 혹은 주최측 발언

16:03 공연2

16:10 시민참가자 발언 - 그룹별4명

16:22공연3

16:29 연대발언3

16:41 공연4

16:48 1천명 떼창

17:00 행사종료, 해산 이후 단체별 캠페인

4. 참가자 준비물

- T셔츠(현장판매)
- 단체 : 깃발, 유인물 및 기타 시위용품